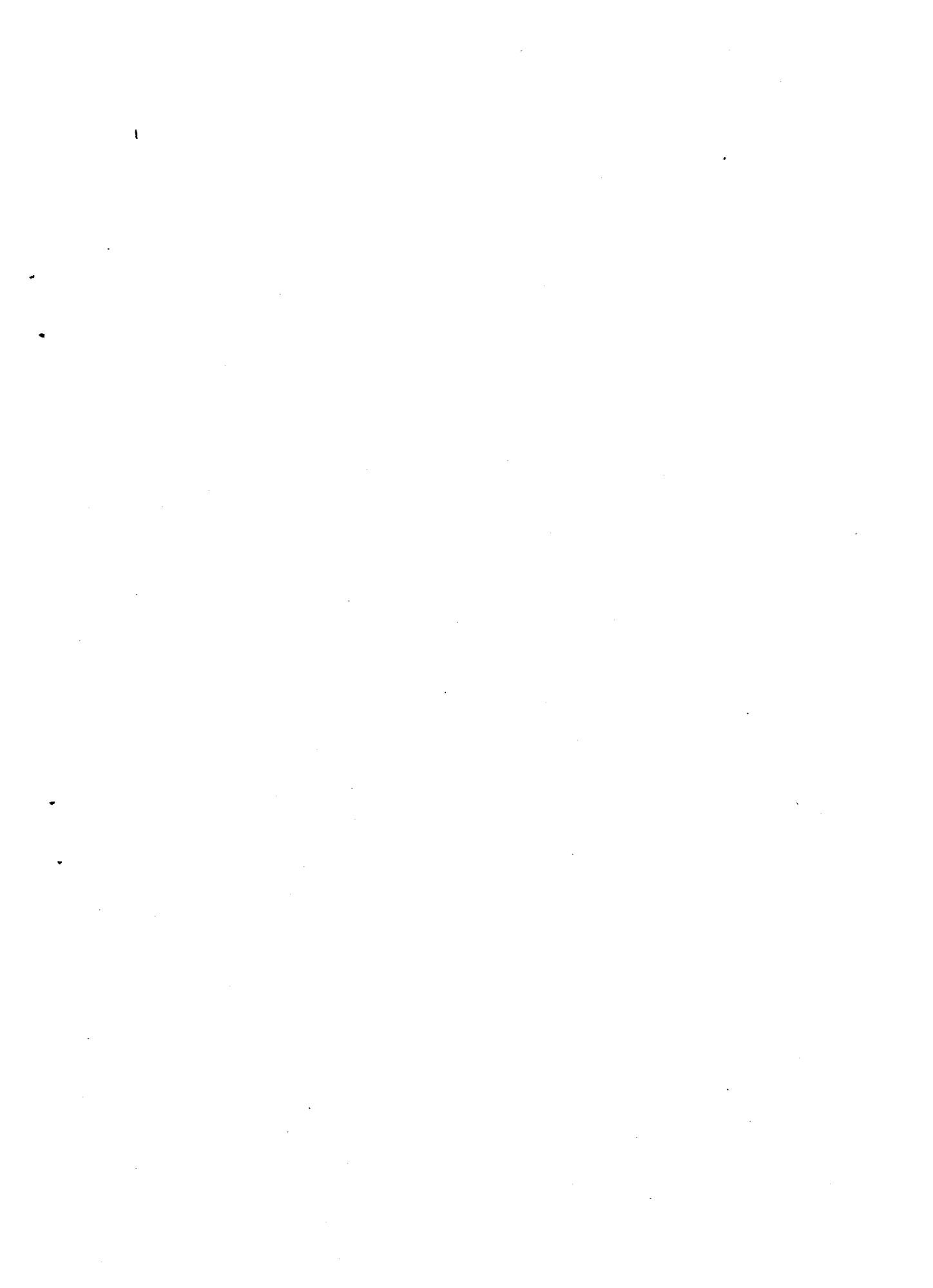


국통 73-1-136

6. 23선언의 전략논거와 동서독관계의 비교평가



국 토 통 일 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1973년도 하반기 용역  
과제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11.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연구  
책임자 : 박 동 희,

연구위원 : 윤 경 우, 한 정 일,

## 目 次

[ 1 ] 6·23 宣言의 背景과 그 意義	3
1 ) 韓國史에 있어서의 統一의 意味	3
2 ) 平和統一政策의 展開過程	5
3 ) 6·23 宣言의 吟味	7
4 ) 6·23 宣言의 歷史的 意義	9
[ 2 ]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의 戰略理論	12
1 ) 國際情勢와 6·23 宣言의 戰略前提	12
2 ) 6·23 宣言의 戰略論拠	16
[ 3 ] 6·23 宣言과 U N에서의 韓半島問題	22
1 ) 6·23 宣言의 國際的 反應	22
2 ) 第 28 次 U N 總會의 兩決議案內容	26
3 ) U N에서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強大國들의 戰略	32
4 ) 美·中共과 韓半島問題	36
5 ) 韓半島問題에 대한 妥協案과 그 歸結	39
6 ) 韓國의 南北 對話再開 提議	45
[ 4 ] 東西獨基本條約의 史的考察과 그 締結의 根拠 및 論難	49
1 ) 史的 考察에 있어서 時代的 区分	49

2 )	바르演說과 이에 대한 知識層의 反應	55
3 )	東獨의 對西獨政策	60
4 )	東獨의 UN 加入申請理由	62
5 )	東西獨의 妥協	63
6 )	基本條約締結에 대한 東西獨의 論難 (일民族  두國家論과 두民族  두國家論을 中心으로)	64
[ 5 ]	結 論	70

## [1] 6.23 宣言의 背景과 그 意義

### 1) 韓國史에 있어서의 統一의 意味

韓國의 긴 歷史를 살펴볼때 그것은 國家史기에 앞서 하나의 民族史였음을 결실히 느낄 수 있다. 멀리 東夷族의 開國과 더불어 시작된 韓國의 歷史는 三國時代→高麗時代→近世朝鮮時代に 이르기까지 명멸했던 濶한 群少國家의 分斷과 統一은 그것이 한 民族이라는 範圍 內에서만 그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史의 政治的 이념은, 國內的인 面을 且置한다면, 이는 民族을 통일시켜려는 끝없는 念願으로 點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新羅의 統一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그것이 비록 滿洲 일대의 광활한 영토를 喪失(亡失)함으로써 우리의 歷史를 矮少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언어와 風習이 같고 血統과 文化와 같은 同一 種族이 한 터전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膾炙되는 위대한 英雄은 그의 일생이 民族의 통일을 위하여 몸바쳐졌음을 알 수가 있다.

高麗時代의 蒙古의 침략이나 近世朝鮮時代의 日本의 침략을 당하여 韓民獨이 抗争했던 것은 그들이 國家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차라리 民族의 터전을 外賊의 발아래에서부터 救出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韓國人の 이와 같은 意識, 즉 民族을 國家에 優先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意識의 배후에 놓여 있는 큰 이유로서는 東北亞圈의

多民族的인 版圖과 그들의 침략주의적인 性品을 들 수가 있다. 北으로는 女真을 주축으로 하는 滿洲族의 침략이 그칠 날이 없었고, 東으로 포복스러운 島嶼民族의 掠奪이 約千年을 계속되고 있으며, 西로는 끈질기게 宗主權을 주장하는 漢民族의 掩襲이 寧日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韓民族은 民族의 굳은 團結만이 活路를 열어주는 것이었으며, 民族의 分裂은 곧 外勢에 대한 無氣力을 야기 시킴으로써 民族의 멸망이라는 비극에 로까지 비약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통일은 제1차적으로는 民族 自存의 大命題인 동시에 民族 繁榮의 基盤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韓國은 國家的인 分裂은 甘受할 수가 있었어도 民族의 分裂은 甘受할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國家的인 分裂은 民族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民族의 分裂은 國家의 멸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韓民族史의 歷代의 위정자들은 民族 統一의 과업을 지상과제로 삼았으며, 비단 單一國家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內部에서 民族이 分裂하는 것은 國家的 分裂보다 더 邪惡한 것으로 看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史의 이와 같은 分斷과 統合의 連續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다행했던 것은 이 民族이 永久히 分斷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설사 國家的으로는 분단되었을지언정 文化·言語·習俗마저 분단된 적이 없었으며, 더욱 다행한 것은 統合을 向한 民族의

念願이 식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日帝의 지배와 列強의 利害關係로 인하여 韓民族이 他意에 의한 分斷의 悲劇을 忍苦한지 30年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이와 같은 民族의 念願 앞에 숙연히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 그러한 발로 중의 하나가 곧 南北의 對話요 6.23 外交宣言인 것이다.

## 2) 平和 統一 政策의 展開過程

建國 이래 30年 동안의 韓國의 外交路線은 곧 세계의 국제정치의 기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리만큼 그 變遷이 無常하였는데, 이는 한 弱少民族이 外勢에 어떻게 흔들려 왔는가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 되돌아 볼 수록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韓國의 外交는 크게 4期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 1기는 1940年代의 承認外交期요, 제 2기는 1950年代의 反共 및 對友邦 一辺倒의 外交期요, 제 3기는 1960年代의 對中立國外交展開期요, 제 4기는 1970年代의 對共產圈 外交期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기 承認外交期 (1940年代) : 1948年 大韓民國의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建國 초기의 국제적 입장, 즉 新生國으로서 國際무대를 향한 挑躍과 分斷國으로서의 立場을 생각하여, 外國으로부터 國家 承認을 획득하는 것을 그 主要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데오로기가 다른 北韓의 政府 수립으로 인하여 韓國은 韓半島



內에서 유일한 合法的 政府로 承認을 받기 위하여 外交 戰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1948年 12月12日 U.N으로 부터 韓半島 內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韓國動亂 이전까지 세계 25 개국으로부터 國家 承認을 받았다.

제 2 기 반공 및 對友邦一辺倒의 外交期 (1950年代) : 비극적인 한국전쟁 이후 韓國은 反共을 主旨로 하여 對友邦 - 특히 美國을 주축으로 하는 西方 國家들단을 一辺倒的으로 상대하는 편협된 외교노선을 지향함으로써 中立主義 國家까지도 경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U.N에서의 分布도 西方國家들이 압도적이었고 韓國戰爭으로 인한 敵愾 때문에 對共產圈 對中立國 外交가 사실상 無望한 상태였음을 생각할 때 1950年代의 外交路線에는 首肯되는 바가 있다.

제 3 기 對中立國外交展開期 (1960年代) : 5.16 軍事革命 이후의 한국 외교는 對中立國 外交였다. 당시 印度, 印尼를 포함하는 제 3 세력은 非同盟 政策을 포방함으로써 阿.亞 세력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우선 숫적으로 西方세 계를 압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U.N에서의 判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추세를 의면할 수 없었던 韓國은 1961. 8月의 對中立國外交 宣稱을 藉口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에 적극외교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제 4 期 對共產圈外交期 (1970年代) : 1970年 8月 15日은 한국 외교의 큰 전환점이었다. 朴正熙 大統頭은 선의의 경쟁을 세의하는 가운데 對北韓 긴장완화를 제안함으로써 南北의 대결을 도발로

부터 競争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對共產 體制의 적극자세는 對東歐 國交易 추진→非敵性國과의 관계 개선을 제의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一連의 外交 指針 이외에도 같은 해인 1971年 8月에는 南北赤十字會談 제의 등 한국 외교의 급진회를 보였다. 그후 1974年 7月의 南北調節委員會를 위한 상호 접촉은 韓民族의 念願인 平和 統一에의 커다란 進一步였다. 더구나 1973年의 6.23 宣言은 客觀的 현실에 能動的으로 대처하려는 우리의 의욕이 顯如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커다란 呼應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6.23 宣言이야말로 韓國 外交 30年의 커다란 轉換點이 되고 있다.

### 3) 6.23 宣言의 吟味

크게 볼 때 6.23 宣言은 현실의 與件에 맞추어 한국의 통일 외교를 自主的으로 전환시킨 결단이있으며, 北韓에 대해서는 平和의 壓力을 加重한 戰略的 布石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로는 韓半島의 平和 統一이 우리의 至上課業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韓國戰爭이 안겨준 상처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픈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위정자들이 주장하던 「北進 統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명제였던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그와 같은 民族的 慘禍를 없도록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民族 內的 敵愾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国土를 통일해야 한다.

이것은 南北 5千万 동포의 한결 같은 소망이다. 현 국제 정세로 볼때 무력적인 통일은 실현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또 다른 外界의 비극을 초래할 公算이 큰 것이다. 따라서 統一을 위한 제1의 전제는 그것이 平和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論理는 国内外的 情勢로 보아 불가피한 전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는 相互不可侵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韓國 亂은 戰爭으로 인한 물질적 파괴 이상의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相互 敵意이다. 戰爭의 慘禍를 겪은지 20여년에 우리는 파괴된 国土는 대부분이 복구되었으나 우리의 가슴에 서려 있는 분노와 敵對 感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상호간의 감정적 挑撥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암암리에 示唆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武力에 의한 도발이 일어나고 既往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加重시킨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破局으로 우리를 물고 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피해와 감정적 상처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호불가침은 統一을 위한 先行 조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國際機構에 南北韓이 함께 참석할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南北韓은 국제 무대에서 同參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서로간의 감정상, 또는 전략상 그 자리를 회피하였으며, 심하게는 피차 자신이 속해 있는 국제 무대에 상대방이 加入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러한 外交 戰略은

상호 對話의 기회를 봉쇄하는 惡影響을 초래함으로써 統一의 기회를 더욱 먼 곳으로 몰아버렸다. 그러나 6.23에서는 이와 같은 姑息的인 방법을 지양하고 국제 무대에 同參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통일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東·西가 해빙 무드에 따라 가까워지는 이 때에 감상적 폐쇄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得策이 아닌가를 切感한 데에서 얻어진 결론인 것이다.

네째로는 共産圈에서도 門戶를 개방하고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제 지난날의 尖銳한 대결에서 벗어나서 상호 共存을 모색하리 만큼 和解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固着된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非敵性 國家에까지 門戶를 봉쇄한다거나 그들에게 의 接近을 忌諱한다는 것은 國利 民福을 위해서 得策이라고 볼 수는 없다. 英國의 宰相 파머스톤이 갈파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국가의 利益만이 嚴存할 따름이다. 설사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敵對的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限 互惠와 平等의 원칙에 따라 交易하는 것은 가장 時宜에 적합한 것이며 이러한 자세야말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4) 6.23 宣言의 歷史的 意義

韓國 外交 四半世紀의 歷史上 6.23 宣言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이를 細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客觀的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適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외관계를 보면 그것은 列強에 의한 他意가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民族感情이 國利 民福을 壓倒하는 史例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찰하여 우리는 對外關係를 단순한 名利나 국제적 도덕만으로써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不利益한 것인가를 切實히 느끼게 되었다. 6.23 宣言은 이러한 종래의 觀點에서 脫皮하여 實利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의 孤立을 스스로 떨쳐 버리려는 勇斷으로 풀이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둘째로는 이제까지 봉쇄 당하고 소외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敵對의인 태도를 일삼던 北韓으로 하여 國際 社會에로 진출케 하여 발전적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정면적인 접촉의 기회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조국의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될 수가 있다. 이제까지의 南·北의 관계는 6.25 事變을 통한 敵意 이외에도 그 이후에 계속된 敵對關係로 인하여 피차의 관계가 더욱 惡化되었음을 우리는 切感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종전과 같이 봉쇄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은 得策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이번의 조치를 통하여 그들과 국제 사회에서 대결하게 된 것은 피차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思料된다.

셋째로는 할슈타인 原則의 退化를 지적할 수가 있다. 사실상

1954年 西獨에서 할슈타인原則이 表明되기 이전에 이미 韓國은 이 원칙에 따라서 對外 關係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초기의 承認外交期의 외교 원칙 -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두 개의 한국론」을 부인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이 불가피 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의 對中立國 外交와 1970年代의 對共產圈 적극 외교기에는 현실적 타산과 할슈타인 원칙간에 심각한 乖離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종전의 강경한 적용에서 신축적이고도 유연한 適應으로 그 진로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72年 6月初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國交樹立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제1보를 내딛게 되었다. 6.23 外交宣言은 할슈타인 원칙의 사실상의 退潮이며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나머지 實利를 의면한 종래의 불합리한 정책으로부터의 용감한 袪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核心은 우리의 對共產圈政策이 종전의 封鎖政策에서 앞으로 開放政策으로 移行한다는 것으로 要約된다. 이같은 開放은 政策을 통하여 北韓側으로 하여금 武力에 의한 現狀變更試圖가 國際社會의 要請에도 附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統一의 課題를 안고 있는 韓半島의 將來를 위해서도 결코 有益할 수 없다는 것을 實感케 함으로써 北韓의 武力赤化企圖의 포기를 새 次元에서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 〔2〕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의 戰略理論

### 1) 國際情勢와 6.23 宣言의 戰略前提

모든 生物은 變化에 적절히 適應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더우기 치열한 生存競爭에서 살고 있는 우리 人間도 넓고 깊은 適應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競爭에서 勝利할 수 없다. 아니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國家도 生命力있는 個體로 보면 역시 國家도 이러한 範疇에서 벗어나는 存在는 아니다. 國家를 둘러싸고 있는 内外의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國家에 대한 壓力과 挑戰은 끊임 없이 없다. 더우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환경 즉 韓國이라는 境界線 밖에서 돌발하는 國際政治上的 變化要因들은 韓國의 管轄領域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이 國際構造에서 파생되는 逆機能現象을 制禦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한 國家가 이와같은 狀況에 對峙할 수 있는 最善의 手段이란 國際政治上的 不利한 요인들을 除去하는 것이며, 次善의 方法으로 그와같은 要因들을 誘導처리하여 自國의 實利의 損失을 最少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國家가 國際政治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란 대개 그 國家의 国力과 正比例하는 경향이 있다.

國家政治 속의 韓國은 國際政治에서의 不利를 除去할만한 能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立場에

서 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實利의 損失을 最少限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6.23 宣言은 새로운 國際政治의 狀況에서 우리의 實利의 손실을 最少限으로 하려는 데에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同時에 이 6.23 宣言은 우리 나라의 內容을 궁극적으로 變化시키려는 것보다는 政策追求 手段의 대폭적인 修正을 시도하려는 데서 또 하나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6.23 宣言에 의한 外交政策의 現實論理로서의 轉換은 韓國 外交의 內容보다는 그 手段이 非現實的이었음을 感知한 데서 可能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의 外交는 '依存的 外交' 一辺倒였다. 우선 우리의 解放과 自主獨立부터가 依存的이었다. 우리 힘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다. 남이 만들어서 갖다 준 것이었다. 이를 더욱 촉진시킨 것은 6.25 動亂이었다. 거의 無防備 狀態에서 갑자기 당한 韓國은 共產主義者들의 浸入을 격퇴하는데 남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의 두가지 경우에 美國의 支援은 絶對的이었다. 특히 東西冷戰의 양상 속에서 생겨 마무리되어 韓國의 外交는 美國 依存的인 外交가 안될 수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 李承晩 大統領에 의한 自由黨 政權의 外交政策은 反共 反日 反中立政策이라는 否定的인 一面과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親善, 親유엔 政策이란 肯定的인 一面이 併存 併行했었다. 自由黨 政權은 이러한 政策을 공고히 하여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과시하고, 이와 동시에 北韓의 國際



舞臺 進出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할슈타인原則을 外交政策 遂行上의 基調로 채택하였다.

韓國의 安保外交도 韓美相互防衛條約과 이를 보완하고 있는 유엔 參戰 16個國宣言에 주로 의존해왔다. 그리하여 李承晚 外交는 이러한 內容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對美一辺倒의 外交일 수 밖에 없었으며 1950年代의 狀況으로 보아 이러한 外交는 韓國의 實利와 安保上에 큰 문제가 야기됨이 없었다. 統一問題에 있어서도 UN을 통한 平和統一 政策이 그런대로 維持될 수 있었다. 張勉 政權을 거쳐 共和黨 政權에 이르기까지도 對外政策의 本質은 거의 變함이 없었다. 다만 共和黨 政權下에서 變化가 있었다면 日本과 의 關係 正常化 및 中立路線을 포방하는 國家와의 關係改善이 主된 變化였다. 그러나 對美一辺倒外交 韓美相互防衛條約을 主軸으로 한 安保, UN에 의한 平和 統一外交 等에는 큰 變化가 없었다.

最近까지도 우리 外交의 3가지 目標은 첫째 北韓의 國際機構 加入 封鎖, 둘째 北韓에 對한 承認 沮止, 셋째 유엔총회에서 韓國 問題 討議 防止였다.

이제 韓國의 外交가 限界點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外交 政策의 根幹이되었던 美國의 對外政策의 變質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1970年代 初부터 美·中共의 接近, 1973年 4月의 北韓의 國際議員聯盟 加入, 5月에 世界保健機構의 加入 等은 우리의 傳統的인 外交政策이 벽에 부딪쳤음을 應變으로 立証해 주고 있다.

우리를 이러한 궁지에서 몰아넣은 直接 間接의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遠因으로는 兩極體制가 多極體制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兩極體制가 사라지게 만든 要素上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소련의 核 能力이 美國과 거의 같게 成長하였다. 그리하여 美·소가 武力 충돌을 한다면 소련이나 美國은 이地球上에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人類의 모든 文明이 抹殺될 것이다. 즉 두 나라는 "nuclear balance of terror"에 도달하여 더 切實한 것으로는 "national survival"에 共感하게 되었다. 경쟁은 破滅을 가져올 뿐이므로 살아 남을 수 있는 方法은 協力하고 共存하는 길뿐이라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둘째 1953年 스탈린의 死亡 後 소련 政權 內에 自由化 물결이 일어나 一人 獨裁體制에서 集團指導體制가 形成되어 그들의 政策의 基本이 변모되었다. 이의 主된 內容은 外國에 대한 軍事援助 및 共產主義 革命의 추진으로부터 生活水準의 向上, 생활 必需品價格의 引下로 豊요한 社會 建設로 변모하게 되었다.

셋째 이와 併行하여 東歐圈의 모든 共產主義 國家들의 多元化 傾向이다. 이들 國家들은 소련의 內·外政策의 干涉로부터 解放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濟적으로도 成長하고, Marxism에 대한 信念도 달라져 소련의 衛星國家로부터 脫피하여 그들의 對外關係의 幅이 넓어졌다.

넷째는 美國과 소련, 그리고 美國과 中共의 접근을 促進시킨

Sino-Soviet axis 의 와해이다. 이는 中·소 두 나라間的 關係 뿐만 아니라 共產圈內的 團結을 무너뜨렸다.

다섯째는 西歐의 國家가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번영을 이룩하여 그 自身の 外交 및 安全保障 問題를 스스로 決定 遂行할 수 있을만큼 成長하였다는 것이다. 東歐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西歐 國家들도 美國의 그늘로부터 탈피하여 獨者的인 路線을 追求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랍에 많은 新生 獨立國이 탄생하여 non-alignment 政策을 取하였다. 이는 美·소의 地球上의 모든 國家에 行했던 tight control을 行使할 수 없게 만들었고, alliance 의 의미를 격감시켰으며, 이들 많은 國家들의 國際社會의 進出은 國際的인 deadlocks을 解消시킬 수 있었으며 끝으로 많은 國家들의 國際聯合의 加入은 UN에서 美·소의 對立 경쟁을 無價值하게 만들었고 그들 자신이 UN에서 커다란 힘을 行使하는 bloc 으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것들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兩極體制를 낡은 遺物로 만들어 버리고 四極 또는 五極의 體制를 形成시켰다.

새로운 國際政治 風土가 造成되자 各國은 그 中에도 美國과 소련은 제일 먼저 實利主義的 및 現實主義的 外交를 指向하고 따라서 冷戰의 遺物인 理念的 外交를 止揚하여 現狀維持, 平和共存의 方向으로 그들의 外交 路線을 追求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國家들은 우리 속에 갇혀있다 풀려나온 짐승들처럼 활개치며 對外

關係의 自由를 萬喫하였다. 그리하여 世界 問題의 萬病通治였던 美國과 소련의 위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또한 지금까지 冷戰의 礎石이었던 이데올로기는 博物館에나 展示할 골동품화하여 美·소, 美·中共은 協助의 길을 걷는 反面 오히려 같은 理念을 갖고 있는 中·소는 不和·反目を 일삼고 있는 形便이다. 더우기 經濟的으로는 세계가 모든 장벽을 없애고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 2) 6.23 宣言의 戰略論換

이러한 國際 潮流 속에서 韓國은 1972年 6月까지 前近代的인 낡은 外交 觀念에 固着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外交路線을 固守해왔다. 그러나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973年 6月23日 朴正熙 大統領은 平和統一外交政策을 발표하였다. 이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살아남기 위한 現實에의 適応이며 美利의 損失을 최소한으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七個項으로 된 平和統一外交政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項은 "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 라는 것이다.

우리의 여하한 措置도 이는 모두 平和的 統一을 위한 方便이다. 동시에 統一이란 모든 政治的 努力의 歸結點임을 우선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6.23 宣言 自体가 두 개의 韓國論을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조항이며 北韓側이 利用할지도 모를 逆宣傳

을 미연에 防止하자는 것이다. 특히 韓國이 公式的으로 北韓을 국가로 承認하거나 統一을 止揚하는 것이 아님을 世界 모든 국가 및 北韓側에 못박아두려는 것이 第一項이다.

第二項은 "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이룩할 平和的 南北 統一의 기초로서 要求되어지는 결정적 要素임을 밝히는 조항이다. 우선 南北韓의 모든 關係는 平和에 바탕을 두어 현재 추진중인 南北會談, 南北赤十字會談을 진행시켜야 成功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 具體的인 內容으로 韓國에 法律的 社会的 障礙의 除去를 要求하는 따위는 南北 對話의 그리고 統一의 沮害 要因임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며, 相互 侵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對話 統一은 물론 分斷된 狀態下的 평온마저 깨뜨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保障되어야 할 조건임을 밝히는 것이다.

第三項은 " 우리는 南北 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써 계속 노력한다" 라는 것이다. 南北韓間에는 理念的으로, 政治, 經濟, 社会 諸分野에 걸쳐 相異點이 너무도 많다. 심지어 오랜 分斷으로 어휘까지도 많이 다르게 쓰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南北韓이 쉽게 모든 點에 一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統一은 기필코 이룩해야 할 課業이므로 兩側은 반드시 現在 進行中인 南北會談을 成就시

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는 조항이다.

특히 北韓側은 이를 宣傳用으로 利用할 뿐이며 심지어는 懷疑를 느끼고 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어 北韓側의 성의를 促求하는 조항이다.

第四項은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北韓은 이미 1973年 4월에 國際議員 聯盟에 加入하였고,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 加入하였다. 現時点에서 北韓의 國際機構의 加入을 反對한다거나 沮止하려는 것은 自家撞着이며 國際社會에서 孤立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現實로 받아들이는 兪事이며 그보다 더 큰 意義로는 우리가 國際社會에서 이미 確保한 適法性에 대한 北韓의 正面 挑戰을 公開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適法性的 既得權을 포기하는 것도 또는 北韓에 適法성을 附与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國際會議에 同席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第五項은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 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UN總會에서의 韓國 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우선 이것은 韓國이 四半世紀동안 堅持해왔던 唯一正統性主張을

密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무난하게 表現해서 U N의 普遍性的의 原則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편 일부 外國人처럼 침예하게 表現한다면 종전의 主張이 適用될 수 없게 된 U N會員國 勤向을 不可避的으로 勘案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北韓을 承認하는 것같은 인상을 줄지 모르나 엄격한 의미에서 個別國家間의 適法性的의 附与는 國家 承認 行為 以後의 効果인 것이다. 相互敵對 및 不承認關係下에서도 U N에 加入되고 다른 國際會議에 同席하는 例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相互 不承認關係를 가진 共產圈과 西歐國家들이 U N이나 다른 국제회의에 同席해서 問題 解決을 위한 努力을 하는 것이랄지 또 아랍圈과 이스라엘이 U N에서 同席하는 문제 등은 우리의 外交 現實化가 결코 北韓에의 適法性 附与가 아니라는 것을 反証하는 것이다.

第六項은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는 것이다.

이는 韓國의 對共產圈政策이 과거의 封鎖로부터 開放으로 크게 變換한 歷史的 里程碑를 밝힌 것이다.

또 外交競争에서 종래의 封鎖, 反對 및 沮止로 一貫해온 守勢的 立場을 攻勢로 移行시킨 政策의 立脚點의 마련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할슈타인 原則에 얽매혀 外交의 幅이 좁았고 또 消極的이었다. 이 第六項은 積極적이고 폭 넓은 外交를 對外에 밝힌 것이다.

第七項은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平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紐帶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對共產圈 開放政策이 모든 國家의 現實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反對해오던 韓國의 급작스런 態度的 變化가 自由友邦들과의 既存紐帶關係를 금가게 할 것을 憂慮하여 나온 條項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自由友邦 國家들의 짐을 덜어주며 그 國民輿論에 대해 韓國의 現實的 合理的 外交 路線의 肯定的인 印象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기초하여 結論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여 外交란 支持와 協助를 얻기 위한 手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固守해오던 外交政策의 路線은 支持와 協助를 얻기는 커녕 오히려 孤立과 非難을 招來할만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利보다는 不利를 가져다 줄 性質의 路線이었기 때문에 利를 많이 確保하고 國際社會에 適應하기 위한 能動的 環境適應策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外交를 소극적 外交로부터 政治外交로 昇華시킴으로써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對外活動에 逆攻勢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려는 戰略이다.

統一에 대해서 民族의 分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것



이지만 여하튼 그것을 現實로 받아들여 놓고 과거의 統一政策과는 달리 段階的으로 統一을 이룩하려는 企圖가 곧 6·23 宣言이다.

強大國이란 그들의 對外政策을 누구의 干涉없이 또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獨者的으로 決定 遂行할 수 있는 國家라고 定義한다. 우리가 6·23 宣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意義는 우리도 美國이나 다른 強大國의 政策에 구애되지 않고, 干涉없이 對外政策을 스스로 決定하여 遂行할 수 있게 된 決定的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韓國도 強大國으로의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勇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6·23 宣言이다.

### (3) 6.23 宣言과 UN에서의 韓半島問題

#### 1) 6.23 宣言의 國際的 反應

6.23 宣言은 現實的으로 韓國의 南과 北에 두개의 다른 統治가 있음을 認定하고 있으며 동시에 UN 討論에 참석하거나 나아가 함께 UN 會員국이 되는 것을 반대 않는다고 밝힌 朴大統領의 宣言은 그 자체로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보다 「이미 뚜렷해진 변화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조바심이 결든 「挑戰」으로 보다는 時勢에 맞춘 당연한 「適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美 國

美國政府는 朴大統領의 6.23 宣言에 대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건설적인 것으로 美國은 전적으로 支持한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지지를 서슴치 않을 것이다. 가령 UN에 南과 北이 同時에 加入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아주 알맞고 論理的이고 건설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은 南과北이 당장은 서로의 깊은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길게 보아 한발씩 한발씩 平和統一에 가까워 가는데 반드시 어떤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美國은 眞心으로 朴大統領의 제의를 찬성 지지한다.』고 「로저스」 國務長官이 말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6.23 宣言은 美國과는 매우 긴밀한 協議끝에, 어쩌면 美國의 강한 勸誘로 나온 것이라는 흔적이 많으며, 또한 美國의 뉴욕타임즈는 「韓國정부가

현명하게도 올가을 UN 總會에 南과 北이 함께 參與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 들였다.」고 한 논평을 비롯해서 6.23 宣言이 서울  
 에서 발표되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환영성명이 일부 보도기관에  
 미리 배부되었다고 한것은 위의 말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닉슨」 「로저스」 「키신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령게 자주 말해오던 「친구와의 유대를 지키면서 적과도 어울리는  
 政策」이 韓國의 6.23 宣言을 낳았고 앞으로 그런 線은 한결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 (2) 仏蘭西

한편 6.23 宣言에 대한 仏外務省의 反應은 아주 好意的인  
 것이었다. 朴大統領의 聲明이 發表된 직후 仏外務省의 한 관계자  
 는 「6.23 宣言이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  
 하고 프랑스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제안도 환영  
 한다」고 프랑스정부의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다.

## (3) 西 獨

그러나 西歐諸國에서와는 달리 같은 分斷國인 西獨에서는 약  
 간 특이한 立場에서 받아 들였다. 朴大統領의 聲明이 나오자  
 즉각 外務省성명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고 發表한 英國이나, 東歐圈  
 이 韓國을 承認하는 경우에는 北韓을 承認하겠다고 비치고 있는  
 프랑스나, 이미 北韓을 무조건 승인한 스칸디나비아 여러나라와는  
 對照的으로 西獨政府는 朴大統領의 聲明에 대해 아무런 公式論評없  
 이 사태발전을 靜觀했다. 即 北韓관계에 관한 한 「無風地帶」나

다음없는 西獨의 國內政治를 反映한 것으로 보이나 이 態度와는  
 달리 西獨신문들은 상세하게 취급했다. 西獨의 三大紙인 「프랑크  
 푸루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右傾中道)과 「쥐트 도이체 차이퐁」  
 (左傾中道)답 「디 벨트」(右傾)는 다같이 朴大統領의 새로운 外交및  
 統一政策宣言을 韓國外交政策의 「一大轉換」이라고 分析했다. 우선  
 「디 벨트」지는 6月25日字에서 「東京의 관측통」을 引用한 DPA(獨逸通信)  
 를 전재하면서 「朴大統領의 宣言은 南韓의 급격한 外交政策의 轉換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南韓의 政策은 지금까지 共產北韓의 承認을 거부하고 서울정부가 韓半島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을 견지하는데 있었으나 지난 5月 北韓의  
 世界保健機構(WHO) 加入에 따라 할슈타인원칙을 더 이상 아무  
 지장없이 유지 할 수 없음이 明白해졌다」고 論評했으며, 「쥐트  
 도이체」지는 6月26日字에서 「게프할트 힐라이어」東京駐在特派員  
 기사로서 「UN의 전문기관인 WHO가 오랜 會員國인 韓國의 意  
 圖에 反하여 평양에 會員권을 부여한 것은 南韓으로서는 비상한  
 충격이었다」고 보도하고 朴大統領의 南北韓UN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聲明에 관해서 「北韓 역시 그들의 UN에 대한 흥미가  
 그렇게 빨리 현실로 실현될줄은 計算치 못했다. 이제 갑자기  
 UN에서의 두개의 韓國이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同紙는 「南韓은 朴大統領의 7個項 宣言으로 일종의 앞으로  
 의 逃走(Flucht nach vorn)를 通해 잃어버렸던 이니시어 티브  
 를 되찾았다」고 評價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紙는 26日  
 字에서 「클라우스 W 벤더」기자의 해설 기사로서 朴大統領의

聲明은 「全韓半島에 있어서의 南韓政府의 单独代表權의 포기」라고 평가하고 이같은 「外交政策의 급격한 수정」은 美日等 友邦들과 充分히 協議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韓國문제 관찰자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것」이라고 논평했다.

同紙는 「冷戰에 있어서 서울정부의 입장은 美國의 對中蘇 접근과 이에 뒤따른 日中(共) 外交關係樹立으로 매우 危險하고 불안정함이 입증됐다」고 분석하면서 西方 여러나라가 北韓을 承認하고 WHO에 北韓이 加入함으로써 南韓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써 지금까지의 서울측의 外交路線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明白해졌다」고 말했다. 同紙는 또 韓國政府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金鍾泌 國務總理가 유럽 및 日本여행에서 歸國한 것이 契機가 됐다고 관측하고 UN에서의 韓國문제 上程에 대한 그 이상의 封鎖는 불확실해졌고 또 政治的으로도 부적당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한 다음, 「朴大統領의 宣言은 전적으로, 과거 너무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잃어버린 政治적 이니셔티브를 만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평양측은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 (4) 日 本

日本の 경우에 있어서 6.23 宣言이 發表되자 「오하라」外相은 異例적으로 内外記者会見을 自請하고 「現實적이고 건설적인 시책」이라고 전제하고, 「韓國政府의 응기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日本外務省은 「北韓을 國家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北韓의 U·N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두개의 韓國”을 뜻한 것이며 日本等 第三國이 北韓과 關係改善을 해도 꼭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시사한것」이라고 해석하였다. 即 現시점에서 日本과 北韓이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반대하지만 蘇聯, 中共 等 北韓支援國이 韓國을 承認하는 段階에서는 日本과 北韓이 관계개선을 해도 묵인한다는 「條件附政策」이라고 보고 환영하였다.

어쨌든 韓國이 긴장완화란 새로운 조류에 따라 국제기관에서 北韓과 同席하고 共產圈國家에의 문호개방이란 유연성을 보인대 대해 北韓이 계속 이에 여행하는 当事者 끼리의 對話에 重點을 둔것은 현상 그대로가 北韓外交에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개의 韓國」 방식에 응하면 北韓내부에서 색다른 잡음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이를 反對한 것이라고 日本은 풀이하고 있다.

#### 2) 第28次 U·N總회의 두 決議案內容

第28次 U·N總회가 9月18日부터 3個月 予定으로 뉴욕本部에서 열리고 있다. 1百4個의 議題를 갖고 있는 이번 總會

는 南北韓問題를 비롯 歴史的인 東西兩獨의 U N同時加入, 유엔 창설이후 퇴적돼 온 軍縮問題, 40年代 유산인 中東紛爭, 財政問題等 급한 案件들을 안고 있다.

특히 금번 28次 U N總會는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原則 宣言」을 통해 지난 四半世紀 동안 U N戰略으로 견지해 왔던 韓半島에서의 韓國唯一合法性的 主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南北韓U N同時加入을 극적으로 宣言한 韓國外交의 一大轉換이 反映된 것이며 韓國問題 討議史上 처음으로 南北韓代表들이 參席하여 격렬한 論爭을 불러 일으킬 韓半島問題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注目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即 韓國의 友邦들이 9月11日 U N事務局에 접수시킨 西方側決議案을 보면 ①韓半島의 緊張을 완화하고 平和的 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南北韓의 對話를 환영하며 이 對話가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②유엔은 언커크의 自進解体決定을 지지한다. ③유엔은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南北韓이 韓半島의 平和를 증진시키고 平和적 統一을 촉진시키고 平和적 統一을 촉진시킬 수단으로 U N에 同時加入하는 것을 지지한다. ④U N安保理는 韓半島平和의 유지와 韓國 休戰協定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관련당사국들과 適當한 과정을 통해 韓國問題를 고려하도록 희망한다는 내용이였다.

이에 비해 北韓을 지지하는 알제리아를 비롯한 共産側이 같은날 U N事務局에 접수시킨 決議案 內容은 ①언커크 解本 ②駐韓外軍의 U N旗사용철폐 ③U N軍司令部解体 ④駐韓外軍의 全面철수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러한 兩決議案을 놓고 U N總會 第1委員會(政治·安保)는 11月14日(韓國 11月15日 새벽)부터 韓半島문제에 대한 討論에 들어갔으며 韓國支持그룹主張과 北韓支持그룹主張을 檢討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韓國支持그룹主張

第28次 U N總會에 臨한 韓國과 韓國을 支持하는 美·日等 25個 西方諸國과의 韓國問題處理에 관한 主張은 ①駐韓U N軍 繼續駐屯 ②南北韓의 U N同時加入等 두가지 點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南北韓對話의 必要性을 強調하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韓國支持勢力이 主張하고 있는 駐韓U N軍 繼續駐屯 問題는 韓國의 金溶植 外務部長官이 U N政治委기자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어떤 代案이 없는限 休戰協定の 당사자인 U N軍을 韓國에서는 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50年初 美軍이 韓國에서 철수한후 北韓의 南侵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부, 韓國의 安保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美國이 休戰協定에 代置할 수 있는 어떤 代案을 모색할 수 있다는 U N軍司 代置에 관한 方案을 탐색하는 듯한 政策을 취하기도 했으나 日本, 캐나다 등 韓國支持그룹은 한결같이 U N軍의 철수는 韓國安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日本은 駐韓U N軍司令部가 解体되면 현재의 休戰機構가 國際平和



와 安保유지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극도의 不安狀態가 韓半島에 發生할 것이라고 主張, 駐韓 U N軍의 계속주둔을 역설했고 「카나다」도 南北韓의 直接對話에도 不拘하고 休戰線 일대의 긴장고조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U N安保리와 当事國들이 적절하고 効率的인 代案을 마련할때까지는 韓國에서의 U N軍 주둔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韓國支持그룹은 또한 駐韓 U N軍은 北韓 및 中共의 용군과 함께 休戰協定の 당사자이며 韓國의 U N軍 과병이 安保理決定事項이라는 이유를 들어 駐韓 U N軍 철수 문제는 安保理에서 處理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아울러 내세우고 있다.

한편 南北韓의 同時 U N加入問題에 대해 韓國支持側은 同時加入이 分斷을 永久化시킨다는 北韓側 主張을 일축, 南北韓의 同時 U N加入은 統一에의 첫 단계라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韓國支持그룹은 南北韓이 同時에 U N에 加入하는 것은 韓國의 궁극적인 統一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모두 U N 및 그 산하기구의 會員이 됨으로써 利益을 얻을 수 있는 狀況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理由를 들어 南北韓 同時加入을 強力하게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아프리카의 中央아프리카共和國은 南北韓同時 U N加入은 全 韓國民들로 하여금 平和統一努力에 보다 效果的으로 參與케 할 수 있다고 主張, 韓國側 立場을 強力히 支持하고 있다.

韓國支持그룹은 南北韓의 同時加入 主張과 아울러 個別加入을 고려하고 있다. 그것은 票의 對決이란 힘의 對決에서 나오는 열기

를 분석하고 냉정을 기하자는데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駐韓U N軍 계속주둔과 同時U N加入等과 같이 韓國側은 南北韓의 직접對話증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U N의 보호하에서 궁극적으로는 南北韓의 自體的인 韓半島問題해결을 기할수 있는 길을 트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韓國支持그룹은 韓半島에서의 南北韓直接對話가 증진되는 것이 韓半島긴장완화를 이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이 韓國側 조치를 支持하고 있다.

## (2) 北韓支持그룹 主張

「언커크」解体, 駐韓U N軍司令部 및 外軍의 철수를 요구하는 共產側 決議案(알제리案)을 내놓은 北韓支持勢力들은 表面上으로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西方案支持 25個國에 비해 10個國이나 많은 35個國이 「알제리아」 등을 支持하고 있으나 內面的으로는 中共, 蘇聯間의 신경전 때문에 各己의 利害관계가 크게 얽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蘇聯은 韓國駐屯 外軍이 美軍이라면서 駐韓U N軍이 解体되어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中共은 「韓國戰爭은 美國과 韓國이 도발한것」이라고 전제하고 U N軍의 解体와 外軍철수를 주장했다.

南北韓의 同時U N加入問題에 대해서도 中共은 「不合理한 것」으로 分斷 獨逸과는 比較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蘇聯도 韓國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것은 南北韓이 U N에 加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論理는 口實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同時加入案에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있다.

이같이 中共과 蘇聯이 表面으로는 北韓을 支持하고 있으나 상당히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만은 分명한것 같다.

中共은 韓國問題로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惡化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蘇聯도 마찬가지로 韓國問題로 인한 美國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원하면서 韓國問題의 自体解決을 오히려 希望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같은 蘇聯과 中共의 態度는 16日 金溶植 外務長官의 연설때 총래와는 달리 退場하지 않고 시종 敬청한 態度에서 엿볼수 있을것 같다. 더욱기 蘇聯과 中共이 UN軍司令部의 解体와 外軍철수를 主張, 北韓立場을 支持했으나 例年과 다르게 韓國과 美國에 대해 도전적 비난을 意識적으로 피했다는데에 注目해야 할것 같다.

中共과 蘇聯은 韓半島情勢를 理念的 側面과 現實的政治理解의 側面으로 区分, 對UN戰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理念的側面에서 北韓支持를 내세우면서 現實政治的 理解에선 韓國問題의 妥協可能性을 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北韓만이 自決을 행사해 왔다」는 東獨主張을 除外하고는 「이집트」 「기니」 等 非同盟國家들도 蘇聯 및 中共과 마찬가지로 「언커크」와 UN軍司令部의 解体를 主張하고 나왔으나 外部勢力의 介入없는 韓國人間의 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主張했다. 蘇聯·中共 그리고 非同盟國들이 北韓과는 달리 韓國問題의 解決에 있어 基本原則에는 변함이 없으나 處理方式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간의 討論過程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6日 西方·共產兩側 決議案의 條文

에 各各 強大國의 南北韓內政干涉 배제와 全韓國民의 主權尊重을  
촉구하는 1項을 挿入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韓國問  
題 解決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U N에서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強大國들의 戰略

韓國問題를 놓고 予想되는 격돌은 單純히 南北韓間에만 限하  
는 것이 아니라 結局 東西 兩陣營간의 격돌로 번져 強大國間에  
착실히 進전돼 가는 緊張緩和를 저해할 우려까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對策은 무엇인가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立場에서 볼때 이번 第28次 U N總會는 9月18日  
이전인 6月23日에 開催됐다고 할 수 있다. 即 韓國은 朴大統  
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原則宣言」에서 그리고 北韓은 韓國의  
6.23 宣言이 있던 날 即時 金日成의 연설을 통해 南北韓의 U N  
同時加入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부터 南北韓의 U N에서의 격돌을  
予想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데 U 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가 一般的으로는 東西 兩陣營間  
의 緊張緩和에 저해작용을 할 요소를 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美·日·蘇·中共等 韓半島問題에 歷史적으로 관계돼 있는 強大國들  
간에 不和를 조성할 可能性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U N軍  
이름으로 주둔하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문제가 U N에서 대두될  
경우 美·日의 太平洋 安保와 直結되는 문제인고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에 족하리라고 본다. 문제가 이와같이 심각하니

만큼 強大國들 間에는 幕後協商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強大國들의 南北問題에 대한 基本戰略은 이 문제가 U N에서 激論을 일으켜 東西間에 不和를 조성하는 것으로 飛化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있는 것 같다.

지난 9月24日 U N運營委員會에서 韓半島問題에 대한 두 決議案이 단일의제로 채택되는데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실과 10月1日 U N政治委員會가 이번 總會의 南北韓問題 討議에 南北韓을 無條件 同時招請하자는 案을 만장일치로 決議했다는 사실등은 1961年 第15次 總會이때 北韓이 U N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하는 條件을 받아들이면 北韓도 韓國問題討議에 초청하자는 이른바 「스티븐슨」案이 通過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北韓이 無條件 同時招請된 것은 처음이며 이로써 史上 최초로 北韓이 韓國과 U N에서 同席하게 되었다. 물론 北韓이 지난 5月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함으로써 U N 옵서버 資格을 얻었기 때문에 U N에 옵서버로서 초청했다는 것은 既定權利를 認定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초청이 政治委員會에서 無條件이란 厚한 대우로 결의됐고 그 決議도 단 30秒만에 異議없이 만장일치로 通過됐다는 것은 幕後에서의 強大國間的 非公式 접촉을 통한 의견 조정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北韓代表들이 討議없는 同時招請決議에 불만을 表示했으나 中共代表들은 그 불만을 묵살하고 말았다는 보도라던지 「토마스」 美U N代表部 대변이 招請決議가 통과되던날 브리핑에서 「美國은 언제나 조용한 문제해결을 추구해 왔으며 韓國문제 역시 조용히 해결하는데 나쁠것이 없다」고 言及한 사실등

도 強大國家들이 韓半島에 관한 U N 討議가 紛争化 하지않고 조용히 끝나도록 이끌어 가고 있음을 직선적으로 노정시킨 사례임이 틀림없다 하겠다.

특히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9月27日 U N本部의 美國代表部에서 열린 記者會見을 통해 U N에서 韓國問題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경우 對立을 피하기 위해 韓國문제를 U N밖에서 관계국들과 협의할 생각이 있음을 밝히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 「個別外交」가 必要하다고 강조했던 發言을 또한 기억해야 할것 같다. 이것은 바로 韓國問題가 對決의 축매제가 되지 않도록 그 長技인 「個別外交」術을 發揮, 強大國間의 幕後協商을 통해 해결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 分明하다.

「키신저」 장관이 시사한 「個別外交」의 대상은 北韓이 주장하고 나온 駐韓U N軍司解体, 外國軍撤收問題와 韓國이 주장하는 南北韓U N同時加入을 어떻게 折衷시키느냐는 것으로 要約할수가 있다.

駐韓U N軍 司令部는 50年 U N安保理의 通過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解体되려면 다시 U N安保理에서 解体決議를 거쳐야 된다는 論理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駐韓U N軍司의 解体에 대해 비록 U N總會가 解体決議를 통과시킨다 해도 이 解体決議가 安保理로 넘어가게 될때 美國이 비토權을 행사하게 되면 그 解体決議는 白紙化되고 마는 것이다.

이번에 西方側이 내놓은 언커크報告에서 韓半島의 安保와 平和問題는 U N安保理事會와 관계당사국간의 協議에 맡긴다고 못박아 놓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韓國의 安保에 직결된 駐韓U N軍司의

解体与否문제가 U N에서 抬頭되거나 駐韓外軍의 全面 撤收를 주장한 案이 통과된다 해도 그것을 U N 安保理에 넘겨 美國의 비토權으로 다시 살려 내려는 戰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문제야 어떻든간에 北韓과 中共이 駐韓 U N 軍司는 반드시 解体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 韓國問題를 둘러싼 東西의 對決은 不可避할 것이다. 이런 結果는 美國이 바라는 것이 아닌만큼 적어도 「키신저」 장관은 그에 대한 妥協點을 모색할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그 妥協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때 그 妥協의 대상은 駐韓 U N 軍司를 駐韓 美軍으로 代替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금년 6 월에 「슈나이더」 美國務次官 補代理가 日本에서 言及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나 10 月 3 日 「포터」 美國務省政務担当國務次官이 뉴욕에서 열린 韓美經濟委員會에서 駐韓 U N 軍撤收決議案이 몇년내에 可決되더라도 駐韓 U N 軍司에는 수십명의 兵力밖에 없으므로 美軍만은 54 年에 조인된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現在대로 韓國에 주둔할 수 있다고 했다. 「포터」次官은 美軍의 韓國주둔이 U N 決議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韓美防衛條約에 의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韓國休戰協定에 대체할 만족스러운 代案이 있다면 그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슈나이더」와 「포터」 發言은 駐韓 U N 軍司를 解体한다 해도 駐韓 美軍만은 充分히 存続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駐韓 U N 軍이 美軍으로 대체될 경우 蘇·中共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이 各者의 安保와 相互牽制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히려 美軍만은 韓國에 계속 주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美軍의 韓國주둔만은 蘇·中共과 기타 共產側에 의해 묵인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U N軍司가 해체될 경우 U N軍이 中共 및 北韓과 休戰協定署名당사자인 고로 休戰協定이 白紙化하여 北韓側에 武力再挑発의 제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잇달아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 休戰後 4半世紀동안 南北間의 武力충돌을 억제해 온 것은 休戰條約의 그 自体에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南北間의 勢力均衡유지와 주변強大國들간의 견제작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休戰條約이 駐韓U N軍의 철수로 무효화될 경우 韓國이 休戰條約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休戰協定の 당사국이 될수도 있고 관계 강대국 또는 U N韓國參戰國家들이 參與하는 새 休戰條約으로 補完할수도 있을 것이다.

#### 4 ) 美·中共과 韓半島問題

第 28 次 U N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는 문제가 갖는 성격보다도 U N을 뒤덮고 있는 政治的 분위기에 의해서 左右될 것이 그 特徵的 意味를 갖는다. 환언하면 南北韓 同時參席下에 토의된 韓國問題이지만 韓半島政治情勢를 토대로한 討議와 그것에 따른 表決보다는 작금의 國際政治情勢가 지닌 強力한 強大國 영향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非同盟그룹의 政治적 반발경향등의 調和에 의해서 決定지어지게 될것이다. 이는 韓國問題의 冷戰 「이 슈」化가 止



揚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韓國문제 토의가 시작된지 5일동안 비록 南北支持세력들간의 確연한 區別과 贊反立場이 드러났지만 그 內容은 실질적인 것이거나 원칙적인 主張을 제시한 것이었을 뿐 상대진영에 대한 非방 공격을 주내용으로 했던 總전의 연설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개국에 열설한 가운데 가장 격렬한 내용을 담았던 연설은 北韓과 알바니아 뿐이었다.

이것은 U N 總회의 분위기가 冷戰時代의 舌戰무대에서 실질적 토의를 위한 무대로의 性格變化를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 해주는 것이다. U N 總회의 정치적 분위기의 성격변화는 물론 美·中共·蘇 등에 의한 強國中心의 新國際秩序에서 연유된 것이긴 하겠지만 各국의 國際정치가 갖는 행동규범이 劃一的인 陳舊外交의 性格에서 多元的 世界秩序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適應을 위한 國家單位의 實利追求外交의 우선경향에서 그것의 現實的 動機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國際政治秩序의 추세를 탄것이 韓國문제토의이며 非冷戰이슈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韓國問題特有의 歷史的문제성을 제기시키면서 그것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려는 것이 中共이며 北韓은 이러한 中共의 의도에 편승, U N 데뷔를 장식하려고 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北韓과 中共이 새삼스럽게 「6.25 戰爭」 발발과 韓國分斷의 책임을 美國에 전가하고 나왔다는데서 여실히 나타났다.

中共이 「6.25 戰爭」을 끈질기게 거론하고 나온것은 다름아닌 U N과 中共關係의 再定立을 노린 戰略때문이다. 中共의 이러한

의도는 71年 8月9日 NYT 「제임즈.레스턴」기자와 中共首相 周恩來間의 會見에서 나온 이른바 「南北韓 平和協定」 체결촉구속셈에도 엮보인다. 周는 당시 「레스턴」 기자에게 「韓國의 戰爭상태는 종결되지 않았다. 戰爭상태의 平和秩序에로의 대체가 必要하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한바 있다.

이 周의 發言은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UN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을 받은 中共의 歴史的 現實을 새롭게 定立할 수 있는 中共나름의 代案제시로 평가됐다. 말하자면 中共은 對UN관계의 再定立을 통해 한국문제의 UN内妥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美國과의 關係強化로 더욱 촉진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韓國문제토의가 한창 進行되고 있는 時期에 이뤄진 「키신저」의 北京방문이 韓國문제에 대한 某種의 妥協可能性을 제기시킬런지 모른다는 관측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환언하면 美. 中共間의 關係強化의 過程이 낳은 한 產物이 「韓國問題의 妥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며 UN에서 韓國問題 討議의 劇的인 變質可能性도 이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可能性을 더욱 짙게 한것이 「키신저」의 訪韓과 朴大統領과의 會談으로 지적될수 있다.

그러나 UN에서 韓國問題討議結果는 美. 中共 그리고 蘇聯等 強大國에 依한 調整이란 面도 있지만 非同盟勢力들의 政治的行動方向에 依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中東戰의 발발은 韓國問題 토의의 열기를 저하시킨 作用을 보일런지 모르나 票의 行方에는 그것과 정반대의 作用으로 나타날 可能性이 또한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 5) 韓半島問題에 대한 妥協案과 그 歸結

東·西의 解氷무드가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中東戰이 발발했으나 強大國間의 힘의 均衡속에서 冷戰의 이슈化를 止揚하겠다는 오늘의 國際情勢는 強大國들의 現實的인 意圖와 努力들로 인해 비록 冷戰의 產物인 韓半島問題이더라도 그 解決의 範疇은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 金번·第28次 U N總會의 性格이다.

金번 第28次 U N總會의 政治委員會에서 展開되고 있는 韓半島問題에 대한 두개의 決議案 即 西方側 決議案과 共產側 決議案間의 對立된 論爭은 그것을 止揚한 形態로의 合意의 무드가 11月19日 부터 表面化되기 시작했다.

「뉴니지어」等 非同盟 15個國들이 19日 U N政治委員會에 提出한 韓國問題에 관한 決議案은 U N韓國統一復興委員會 (언커크)의 解体에만 국한시키고 南北韓이 對話를 계속 促進할 것을 호소하는 決議案으로서 또한 74年 U N總會에서 韓國問題 討議를 계속 그때까지 U N事務總長이 南北韓이 7.4 共同聲明 目標達成을 위해 이룩한 成果와 U N이 韓國으로 부터 손을 떼고 駐韓外國軍을 철수시키는데 必要한 措置들에 관해 總會에 報告할 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이 決議案은 1972年 7.4 共同聲明에 포함한 3個統一原則을 引用하고 있다. 이 案은 되도록 빨리 平和統一의 目的이 成就될 수 있도록 ①南北韓간의 軍事對峙상태를 해소하고 ②平和協定을 체결하며 ③政治, 軍事, 經濟, 文化 및 外交面에서 協力과 交流가

있을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 決議案은 또 韓國對內問題에 外勢의 干涉이 있을 경우 이는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南北韓間의 對話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表明했던 것이다. 튀니지案에는 同時加入에 대한 구체적인 言及이 없으며 튀니지의 라치드 드리스大使는 이에 대해 「同時加入의 문제는 아직 未成熟」이라고 손대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밝혔다.

한편 스웨덴은 U N C 問題를 「代案없는 U N C 解体는 반대한다」는 전제아래 이 문제를 安保理로 넘기는 한편 합의가능성 없이 平行線을 가는 문제는 다시 시기 성숙을 기다리자고 했다. 이것은 同時加入問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겠다.

인도네시아 주장도 ①U N C는 解体를 原則으로 하되 「韓國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배려, 휴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며 ②同時加入은 어느때든 南北韓자신들이 스스로 決定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비슷한 總의 意見이었다.

印度 역시 「休戰協定에 대신할 수 있는 南北韓의 基本관계 設定」을 주장했으며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見解도 U N C의 代案모색과 협상을 통한 解決에 있다.

折衷過程에서 各國의 異見이 구체적인 理解를 갖고 노출되었으며 또 作業過程에서 새로운 장점이 나올 수 있었지만 折衷作業의 全體的인 무드는 U N C는 解体를 전제로, 代案에 대한 적절한 조커의 강구, 同時加入은 南北韓 自決의 원칙, 그리고 南北對話의 積極的인 추진으로 性格을 綜合할 수 있다.

折衷作業이나 그 내용이 갖는 의미는 「南北韓의 집요한 외교공세를 中和시킬 필요도 있지만 U N에 관한 것이 可能하고 支配的인 공기」라는데 있겠다.

다음으로 注目할 것은 이를 추진하거나 환영하는 나라들의 背景으로서의 튀니지는 아프리카국인 同時에 이른바 第3世界乃至 非同盟國家이며 스웨덴은 北歐를 대변할 수 있는 立場이다.

또 蘇聯과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印度, 美國 및 中共과 연결될 수 있는 파키스탄, 東南아시아블록의 인도네시아 等 모두가 多様な 背後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코 우연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특히 이들나라들이 모두 완전한 國交까지는 아니더라도 南北韓과 同時에 外交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도 看過할 수 없다. 即 이러한 中間的인 立場 내지 背後關係가 경우에 따라서는 強大國을 포함한 광범위한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는 可能性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U N政治委員會에서의 韓半島問題討議는 20日下午(韓國時間 21日 아침) 西方 共產兩側이 各各 二個決議案을 올해 U N總會表決에 회부함으로써 합의 ①南北 7.4共同宣言정신 재확인 ②平和統一을 爲한 南北韓간의 多方面의 交流와 협조 ③「언커크」 解体 等を 내용으로 하는 合意聲明을 채택했다. 이같은 兩側代表들간의 劇的인 合意로 南北韓이 各各 주장하는 두개 決議案의 正面對決과는 달리 今年第28次 U N總會에서 韓國問題 討議는 사실 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兩側의 合意는 지난 17日 부터 西方側을 代表한 「네델란드」와 共産側을 代表한 「알제리아」가 幕後折衷에 成功, 兩側이 各各 회의를 열어 合意內容을 받아 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유엔」政治委員長の 聲明形式으로 된 兩진영의 合意全文은 다음과 같다.

“「유엔」 政治委員長은 韓國問題에 관한 두개 決議案의 제안국들과 協議한 結果 이 두 決議案을 이번 「유엔」總會表決에 회부치 않기로 合意했음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議長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도록 승인 받았다. 「유엔」은 南北韓이 1972年 7月4日 다음과 같은 3個 再統一原則을 마련한 7.4 共同聲明을 發表한 것에 만족하며 이를 지지한다.

① 韓國의 統一은 外勢의 依存이나 干涉없이 独立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韓國의 統一은 武力에 의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韓國의 國民的 大團합이 촉진되어야 한다. 「유엔」은 南北韓이 對話를 계속할 것과 7.4 共同聲明精神에 의해 独自の이고 平和的 韓國再統一을 위한 多方面의 交流와 협조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유엔」 總會는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언커크)의 즉각 해체를 결의한다.”

이상과 같이 兩側이 合意한 聲明은 「오토보르크」, 政治委員長에게 發表權限이 넘겨졌는데 「보르크」議長은 21日 午前(韓國時間 22日

새벽) 政治委員會에서 이 聲明을 發表하고 總會는 來週에 이를 성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동안 韓國문제와 관련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中共, 서울 방문, 中立國 一部の 수정안 제안움직임과 함께 무엇인가 나올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20日 이같은 劇的合意는 予想보다 더빠른 결말로 보여진다. 西方側의 소식통들은 이날의 劇的인 妥協으로 韓國問題가 당분간 「유엔」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外交官들은 「키신저」 美國務長官과 北京指導層이 韓國問題 特히 「유엔」軍司令部와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모종의 행동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이 타결은 「키신저」氏의 努力으로 可能해졌다고 U N 옵서버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번 第28次 「유엔」總회의 韓國문제 토의는 東西兩진영의 妥協으로 表決이란 正面对決없이 幕을 사실상 내리게 됐다.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지난 9月 「조용한 韓國問題討議」를 제창한 이래 여러 갈래로 모색됐던 韓國문제에 대한 妥協은 西方과 共產 兩側의 決議案中 共通되는 部分만 살리고 「유엔」同時加入, 「유엔」軍司解体 等 対立하는 部分은 건드리지 않은채 넘어갔다.

금번 「유엔」 總회의 韓國문제 토의경과는 어느때 보다 妥協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即 運營委에서의 單一議題채택, 政治委의 南北韓代表 無條件同時초청이 모두 兩側의 妥協으로 조용히 處理됐다.

이러한 妥協의 분위기는 東西간에 対立을 피하려는 국제적 「무드」의 反映이라는데 의심이 없을 것이다. 南北韓을 뒷받침하는

強大國들은 이일로 해서 그들의 基本的 「데탕트」에 작은 損傷이  
나마 오는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韓國문제에 대한 妥協움직임에 韓國側은 비교적 수긍하는 立場을  
견지했으나 北韓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 「유엔」무대에 나서게된  
北韓은 이곳을 그들의 一大 宣傳場으로서 利用하기 위해선 對立분  
위기가 바람직 했을 것이다. 이런 北韓을 타협의 方向으로 설득  
하는데는 그들의 最大 後見者 中共의 強力한 調整이 必要했다.

中共의 北韓에 대한 強力한 勸誘는 「키신저」와의 會談以後에  
행해졌다는 것이다. 中共이 北韓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美·中共會  
談에서 「유엔」軍司의 장래와 그 代案문제에 대한 어떤 方向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키신저」가 中共을 방문한 이후부터 韓國문제에 대한 어떤 妥  
協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징후가 여러곳에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었  
다. 黃華中共代表의 政治委에서의 부드러웠던 연설, 金溶植外務長官  
의 言動變化등은 韓國問題討議가 무언가 새로운 方向으로 進行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卽 票對決에 신중론을 퍼던 金長  
官이 16日에는 17 票 乃至 20 票차이의 勝算이 있다고 장담한  
것은 韓國문제가 表決없이 終結될 전망이 큰것으로 관측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表決 회피의 背景에는 國際的 解氷부드와 強大國의  
조정외에 相互票對決에 대한 自信心결여란 基本要因을 무시할수도  
없을 것이다.

現在 韓國문제에 대한 「유엔」會員國들의 態度는 거의 비슷하게  
3分되어 있다. 1百35個 會員國中 약 3分の1씩이 西方側 支



持, 共産側 支持 및 棄權으로 分析됐던 것이다. 特히 「튀니지」等 中立的인 非同盟國들이 별도의 中間的決議案을 제출했던 움직임으로 보아 中立的棄權票를 兩側이 支持로 끌어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운 立場이었던 것이다.

이런 狀況下에서 南北韓 모두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을 中間的 決議案을 받아 들이기 보다는 表決自体를 회피하는 態勢가 적다는 判斷이 들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6) 韓國의 南北對話 再開提議

南北會談은 그동안 調節委가 3차례, 赤十字會談이 7차례 열렸으나 北韓當局이 지난 8月28日 南北調節委 평양측 共同委員長 金英柱의 성명을 통해 調節委 서울측 責任者의 輕率要求等 一方的인 宣言으로 그간 中斷된바 있다.

政府는 北韓의 이른바 8.28 聲明으로 인해 中斷상태에 있는 北韓의 南北會談을 再開하도록 北韓當局에 強力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11月15日 알려졌다.

特히 서울側 南北調節委員會는 調節委의 構成員과 人員을 擴大, 개편하는 것이 必要하다면 이를 포함한 모든 問題를 다루는 第4次 幹事委員會會議을 열어 會談再開를 서두르자고 평양측 調節委에 提의했다고 서울측 調節委의 한 政務官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會談再開를 위한 幕後折衷이 南北直通電話를 통해 進行중」이라고 전하면서 「第4次 간사회에서는 모든 問題를 허

심탄회하게 협의하자고 서울측은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調節委의 움직임과 발을 맞추어 大韓赤十字社は 第8次 南北赤十字會談을 年内에 서울에서 열자고 이날 北韓赤十字會에 제의했다. 大韓赤十字側은 이같은 제의가 판문점 연락위원회를 통해 15日 오전 北韓赤十字會에 전달됐다고 밝히고 第8次赤十字會談의 具體的인 日程을 협의하기 위해 16日 午前 10時 판문점 中立國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南北연락책임자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北韓은 평양측 調節委副委員長 柳章植 명의로 16日 正午 電話通知文을 張基榮 서울측 부위원장에게 보내 「調節委改編을 협의 하려는 서울측 제의에 대해 유의한다」고 전제 6.23 宣言外交宣言을 취소하고 反共法 國家保安法 위반자를 석방하고 政黨 社會團體代表로 南北調節委를 構成하자는 등의 條件을 제시하였다.

당초 南北對話가 中斷된 것은 金大中氏 事件에 北韓이 金英柱 평양측 共同委員長 명의로 서울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李厚洛 서울측 共同委員長이 北韓측에 7.4 共同聲明精神을 유린한 金의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한 것이 그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비난반박이 있은후 南北관계는 급격히 冷却되고 서로 비방 증상하지 않는다는 7.4 共同聲明의 合意를 無視, 特히 北韓側이 韓國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후 南北間의 모든 對話는 사실상 中斷되고 말았던 것이다.

뜻하지 않은 金大中氏 사건의 發生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달잡아 北韓측이 一方的으로 會談을 중단하고 南北關係를 크게 冷  
却시킨것은 더욱 失望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지난날은 어쨌든 이제 大韓赤十字社와 서울측 調節委員會  
에서 南北對話의 再開를 제의 했음으로 北韓側의 성의 있는 呼応  
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側은 6.23 宣言을 취소하고 保安法 反共法 위반자  
를 석방시켜야만 會談에 應하겠다고 한 処事는 韓國側으로서 받아  
드릴수 없는 條件이라 하겠다.

調節委를 改編해야만 會談에 應하겠다고 성명한 것은 8月28日  
로 이는 6.23 宣言이 있는 훨씬 뒤일임에도 不拘하고 6.23  
宣言을 取消하라는 條件이라 든가 7.4 共同聲明이후 南北對話時 會  
談開催와 결부시키지 않았던 保安法, 反共法 폐기를 條件으로 내세  
운 그들의 立場을 받아 드릴수 없는 것이며 會談再開를 고의적으  
로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어떻든 會談自體의 無用性은 그 어느쪽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할 것을 表明하고 있으며 韓國을 둘러싼 四強構造도 韓半島에  
서 現狀維持로서 緊張緩和를 도모하기 위하여 默示的이든 明示的이  
든 南北會談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側의 8.28 성명의 저의는 여러가지로 생각되지만 그중에  
하나는 第28次 U N總會를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이 共產진영내에서 까  
지도 默示的으로 肯定的 反應을 받고 있으며 금번 28次 U N總

會에서도 韓國側 立場을 난처하게 하기 위하여 金大中氏 사건으로 韓國에 不利한 국제적 물의를 일으켜 國際的 여론을 北韓에 有利하게 유도하려는 戰略이 內在해 있음을看過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第28次 UN 總會 政治委員會가 合意한 事項中 重要한 比重을 차지한 것이 「7.4 精神」 再確認과 南北韓交流促進 사항이었음을 想起할때 北韓의 閉鎖的 態度는 國際輿論과 韓半島에 影響을 加하는 強大國들의 作用으로 不可避하게 會談을 再開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問題는 南北會談의 再開에 있어 政府는 民族念願의 至上課題인 統一民族國家를 이룩하려는 5千萬 民衆의 真正한 所願이 達成되기 위해 真正코 信賴받은 政權이 되어야 할 것이며, 民衆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한 그것은 한낱 위정자의 편의에 따라 利用될 것이 피차간에 明白한 것이다.

#### [ 4 ] 東西獨基本條約의 史的考察과 그締結의 根柢 및 論難

賢明한 現實主義에 立脚한 歷史的인 朴大統領의 6.23 平和外交宣言은 國內外的으로 높이 評價받고 있으며 東西獨으로 하여금 今年 9月 19日 UN에 同時加入하겠음 한 東西獨基本條約과 類似점이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고로 여기서 6.23 宣言과 東西獨과의 比較評價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는 어떠한 政治的 變動에 의하여 東西獨의 基本條約이 체결 되겠음 되었으며 그후의 東西獨이 對立되어 있는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를 考察하고, 우리와의 同質性은 무엇이며 異質性은 무엇인가를 考察할까 한다.

本格的인 問題를 論하기에 앞서 미리 밝히고자 하는 것은 東西獨이 서로 憲法 및 기타 法的根柢를 土臺로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있으며 論難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역시 兩獨政策을 明確히 밝히기 위하여 統獨政策에 基本이 되는 法的問題도 加味 다 하고자 한다.

##### 1) 史的考察에 있어서 時代的 区分

크게 나누어 볼 때 西獨政府의 統一方案은 아테나워時代와 브란트時代로 兩分 할 수 있으나 現政權인 社民黨時代와 草創期時代부터 復興時期까지인 基民黨時代와 聯政時代 즉 基·社聯立時代가

있었기 때문에 4期로 区分 할 수 있다. 1)

설사 이상과 같이 統独政策의 時期를 区分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기간 동안인 24年間에 걸쳐 同一性을 유지한 유일한 政策은 「全独民族의 自由自決原則에 입각한 自由選舉를 통한 統独方案」이며 이는 앞으로의 政策에서 變化없는 基本政策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政策의 근거는 1949年 5月8日 制憲議會格인 議會議院이 反對 11票로 通過시킴으로서 確定된 基本法 第146條를 土臺로 한것이다. 基本法 前文은 統一을 위한 努力을 하여야 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으며 이어서 第146條는 前文과 關聯하여 「統獨은 自由選舉를 통한 自決原則에 따라 이룩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政府가 西獨에서 樹立된다 하더라도 統獨에 對한 基本政策을 變更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基本法的 土臺를 근거로 各期別 統獨政策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었나를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

註 1. 가) 아데나워時代인 1949年부터 1963年 10月까지의 14年間.

나) 에르하르트時代인 1963年 10月부터 1966年 11月까지의 3年間.

다) 키징거 基·社聯政時代인 1966年 12月1日부터 1969年 10月까지의 3年間및

라) 브란트 社民黨時代인 1969年 10月21日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등이다.

(1) 아데나워時代 ( 1949.9 ~ 1963.10 )

1949年 9月7日 西独 본市에 独逸聯邦共和國이 樹立된 以後부터 1955年까지의 時代는 統独政策의 基本形成時期로서 아데나워 政權은 統一政策으로 첫째 民族自決原則을 내세웠으며 둘째 4大 強大國의 責任下에 統独이 成就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셋째 全獨國民이 參與한 自由選舉下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1950年 3月22日 提議했던 아데나워 首相은 소련과 外交關係를 樹立시킨것을 기회로 「소련이 우리와 外交關係를 맺은것은 우리 본 政府가 全獨을 代表하는 合法政府임을 認定한것」이라고 말하면서 全獨을 代表하는 唯一合法 政府임을 1955年 9月22日 宣言했고 다음날인 23日 議會는 이를 確認하는 決議案을 通過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다음해인 1956년에는 할슈타인 原則을 宣言하여 國民의 基本權인 自由를 保障하는 條件下에서만 統一이 成就될 수 있음을 1957年 1月31日 政府의 새해 施政演說文에서 밝히었다.

이로서 西独 역시 韓國과 같이 赤化統一이란 있을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統独政策을 基本으로 아데나워政府는 東独政權과 直接協商하는 것은 東獨을 國際法上的 國家로 認定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 政府와 政府間에 直接協商을 拒否하고 4大強大國을 相처로만 統独問題 論하겠다는 強力한 反共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2) 에르하르트 時代 ( 1963.10 ~ 1966.11 )

1963年 10月18日 새로 選出된 에르하르트首相은 그의 就

任 演說에서 아데나워首相의 統獨政策을 따를 것을 明白히 하면서 基本法 前文과 第146条에 의한 自決原則에 입각한 自由選舉方式의 統獨政策을 再確認했다.

그의 前任者 아데나워首相의 路線을 이어받은 에르하르트首相 역시 統獨問題에 關한 限 東獨政權과 直接協商하기를 完강히 拒否했기 때문에 1966年當時 野黨이었던 社民黨과 東獨의 울브리트가 領導하는 共産黨인 社會統一黨間에 豫定되었던 統獨에 關한 會談이 좌 絶되고 말았다. 2)

### (3) 키징거 時代 (1966.12 ~ 1969.10)

키징거政府는 브란트의 社民黨과 大聯政下에 構成된 政府로서 브란트黨首가 外務相, 同黨의 副黨首 베너氏가 全獨問題相(內獨關係省의 前身) 등 主要部署等을 차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統獨政策에 많은 變化가 있었으며 이때의 이 變化가 東西獨이 基本條約을 체결 하겠금 된 礎出點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註2) 이 會談은 1966年 6月30日에 하노바에서 開催하기로 豫定되어 있었으나 西獨政府가 東獨演士들의 신변을 保障하는 法案만 通過시키고 根本的인 政治刑法의 改定도 없고 東獨政府 代表를 認定하지 않는 것은 東獨政府에 對한 모독이라고 非難하면서 豫定된 會談을 拒否함으로써 開催되지 못했다.



이러한 政策變化가 일어나게된 原因은 앞에서 말한 与件외에 긴장완화라는 世界情勢에서도 影響을 받았다.

1966年 12月 13日 새로 選出된 키징거 首相은 그의 施政演說을 통하여 「國家의 安定과 經濟復興은 國內외의 平和가 유지될때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政府도 소련·체코·폴란드 등의 東歐諸國에 對한 對立關係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고 긴장완화에 적극노력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아태나위路線인 唯一合法性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실사 키징거 首相의 演說이 過去의 政策인 唯一性論을 답습한다는 內容에는 變化가 없었다 하더라도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의 기초가 되는 對東歐政策에 있어서 긴장완화정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樹立했다는데서 그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키징거 首相의 見解에 대한 첫結實은 1967年 1月 31日 共產國家인 루마니아와 外交關係를 樹立함으로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當時의 브란트外相은 同年 4月 12日 런던에서 西獨의 平和政策과 긴장완화정책을 發表하고 4月 20日 할슈타인 原則의 폐기 可能性과 東獨認定 可能性을 發表하여 지금까지의 일관된 政策에 一大改革의 可能性을 비쳤다.

그리고 內的으로는 禁止되었던 共產黨의 活動을 허용하고 東獨에서 끈질기게 要求한 政治刑法을 改定했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變化를 支持한 國民與論은 社民黨이 政權을 掌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4) 브란트時代 ( 1969.10.21 ~ )

그리하여 1969年 10月 21日을 期하여 戰後 계속 집권하던 基民党時代에 終止符를 찍고 새로운 社民党時代인 브란트時代가 개막된 것이다.

同年 10月 28日 施政演說을 통하여 새로 選出된 브란트首相은 「東西獨의 人的 및 物的 거래가 長期間惡化되겠금 한 原因이 共產政權인 東獨政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완강한 보수정책을 믿고나간 基民党政府에도 있는것이다」라고 基民党政府를 非難하므로서 새로운 對東獨政策을 樹立할 것을 시사하고 이어서 東獨이 強力히 主張한 政府間會談을 수락할 뜻을 公式的으로 밝히면서 東西獨政府間의 會談은 國際法的으로 東獨을 國家로 承認하는 結果가 초래되기 때문에 東獨의 提議를 수락할 수 없다는 基民党政府의 主張에 對하여 論評하기를 「兩獨政府間의 會談이 開催된다고 해서 國際法的으로 東獨을 承認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內國的關係를 뜻하는 것에 不過하다」라고 論이 함으로서 對東獨會談을 위한 法的돌파구를 모색하는 論調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土台로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프리트에서 兩獨首相會議가 最初로 開催되었으며 이어서 同年 5月 21日 西獨의 칸넬市에서 第2次 頂上會談을 갖었으며 그후 빈번한 兩政府間의 會談이 開催된 結果 1972年 12月 21日에는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된 것이다.

東西獨關係를 完化시킨 이 基本條約은 兩獨의 UN加入을 加能케 했으며 東西 긴장완화에 기여했다.

이 東西獨基本條約은 우리의 6.23 宣言과 結果的으로 유사하며

東西獨의 政府間 會談은 7.4 聲明後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과 비슷한 點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東西獨의 경우와 우리 의 경우와의 異質點과 同質點을 区分하기 위하여는 먼저 어떠한 事件이 西獨內에서 形成되었기에 69年以來 政權을 잡은 브란트政府가 아데나워政府와는 正反對되는 政策을 樹立, 밀고 나갈 수 가 있었는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미 (3)에서 밝힌바와 같이 基民黨의 基政時代인 1966年 12月부터 對東獨政策의 變化의 징조가 온것이다.

이러한 政策變化의 징조는 社民黨이 政權에 直接적으로 參與하 으로서 發生된것이며 또한 社民黨은 이러한 對東獨政策을 政權에 參與하기 前인 野黨時節부터 始終 主張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立場에서 볼 때 事實化된 것에 不過했던 것이지 새로운것이 아니었다고 말 할 수 있을것이다.

## 2) 바-르演說과 이에 對한 知識層의 反應

그러면 무슨理由에서 社民黨은 基民黨과 路線이 다른政策을 樹立하였는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러한 政策은 社民黨의 進보정책에 만 基因된것이 아니라 完강한 東獨의 對西獨政策에 따라 突破口를 찾으려는 社民黨의 政策이 加味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西獨內 知識인의 호응에 힘입은 政策이 아니라고 말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上記結果를 차례

시킨 社民黨政策을 가장 代表할 수 있다고 認定할만한 바-르의 演說內容과 이에 대한 지식인의 反應 및 東獨의 對西獨政策과 UN 覺書等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1960年代 初에 들어 社民黨은 基民黨政府가 東獨과는 政府間의 會談을 할 수 없다는데 對하여 強力히 反對했던 것이다.

基民黨政府態度에 反對하는 여러 社民黨 指導者들의 見解들 중에서도 現 西獨政府의 首相省長官이며 東西獨基本條約을 탄생시키는데 參與을 맡았던 브란트政府의 對東獨協商代表였던 當時의 에곤 바-르 首相省次官의 1963年의 演說을 들 수 있다.

1963年 當時 브란트가 이끄는 西柏林市의 公報担当官이었던 바-르는 論壇 이란 곳에 있는 Evangelische Akademie에서 同年 7月 15日 統獨政策에 對한 社民黨政策을 밝힌적이 있다. 그의 見解에 의한다면 強大國인 소련의 同意없이는 統獨이란 不可能하다는 것이었다.

『統獨政策은 獨逸國民自體의 問題이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內國問題이나 現國際情勢가 內國問題로만 허락하지 않고 있고 對소 및 다른 諸外國들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外務政策의 성격의 一面도 띠고 있다. 그러므로 統獨政策은 內國政策도 外務政策도 아닌 특수 關係를 맺고 있는 특수政策에 該當되는 것이다.

즉 內務다, 外務다라고 말 할 수 없는 中間政策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獨政策 역시 有이나 또는 無이냐는 極端政策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또한 完全한 自由總選舉를 통한 統獨이어야 한다는 政府의 政策이 되어서도 아니되며 (當時의 基民黨 政府

政策을 뜻함) 選舉를 完全否定하는 독재정부의 方法이어서도 아니되고, 選舉이어야 한다, 그래서는 아니된다는式 等等의 極端的인 方策은 모두가 希望없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것은 낡은 思考方式에서 나온 政策일뿐 平和政策과는 거리가 멀고 아무런 意義가 없는 方策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미루어 보아 獨逸의 統一이란 것이 어떠한 歷史的인 순간에 갑작스레 올 수 없다는 것은 明確한 것이며 꾸준한 努力이 쌓인 후라야만 可能한 것이다.

統一을 成統하려면 우리와 얽힌關係를 맺고 있는 소련의 利害關係도 念頭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소련의 利害關係를 念頭에 두고 統獨關係를 생각하여 보자면 소련의 利害關係로 얽혀있는 東獨政權이 우리 西獨政府에 의하여 몰락당하여 統一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利害와 東獨의 利害를 念頭에 두고 政府間의 協商을 통하여 첫단계로 東西獨間의 거리감을 좁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統一에의 첫발이 될것이다.

우리 政府가 (基民黨政府) 「對東獨과의 直接的인 協商은 東獨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수 없다」라는 理由로 統獨을 위한 直接協商을 완강히 反對하고 있는데, 이는 歪曲된 견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美國이 中共을 國際法上의 國家로 認定함이 없이 數次에 걸쳐 제네바와 와루샤워에서 中共代表와 會談을 進行시킨 적이 있는데 이世上 어느 누구도 美國이 中共을 承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

政府가 東獨과 直接協商에 임하기를 要求하는 바이다.

東獨政府의 提議에 따라 우리 政府가 直接協商에 臨하므로써 東獨內의 점차적인 變化를 試圖할 수 있으며 이러한 方策에 따라 統一을 성취시키는 政策을 樹立해야한다. 즉 나의 確固한 主張은 갑작스런 統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接近에 의한 變化政策"을 主張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接近에 의한 變化政策"을 수행함이 없이 東獨과의 直接協商을 완강히 反對하면서 東柏林에서의 어떤變化를 바란다는 것은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지 政治를 하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sup>3)</sup>

이상의 바-르氏 演說內容을 간추려 보자면 첫째 統獨問題에 소련의 利害關係가 깊숙히 關與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利害關係를 참작하는 政策이 樹立되어야하고 둘째 東獨內의 變化가 없이는 統一이 이루어질 수 없고 統獨을 위한 東獨間의 變化란 直接的인 접촉에서 만이 可能한 것이며 아데나워政府의 態度와 같이 直接協商을 反對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과 셋째 接近도 없이 東獨內의 變化를 바라는 基民黨政府의 態度는 政治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란다는 것 等等이다. 이러한 바-르 西柏林市 公報担当官의 所見은 社民黨이 政權을 잡고 자신이 社民黨政府의 對東獨協商代表가 된 1969年 後부터 現實化 시키었으며 그러한 現實이 東西獨 基本條約을 탄생시키는 結實을 맺겠음 한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註3) Deutschland Archiv . 1973. 8月号 . S 862 ff.

이러한 바-르氏の 「接近에 의한 變化政策」은 西獨内の 多數 知識層에 점차적으로 스며들어 아데나워 政府가 主張했던 50年代의 見解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고 60年後半期 부터는 東獨과의 直接的인 協商을 통한 「接近에 의한 變化政策」을 要求하는 大學人을 선두로하는 與論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리고 西獨의 與論은 統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唯一合法性을 기반으로 하는 완강한 統獨政策으로 말미암아 東西獨의 關係가 모든 분야에 걸쳐 완전 차단되어 兩獨國民이 相互訪問할 수 없고 장기 차단으로 인하여 國民性自体에 變化가 일어나 異質의 體質化, 性格의 他民族化될 念慮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도 있는 統一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언젠가는 統一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同族間의 長期차단으로 異民族化된 性格差 때문에 副作用이 發生될수도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一次的으로 東獨政權이 主張하는 政府間 會談을 수락, 兩獨國民의 相互訪問 問題만이라도 解決하는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知識層의 與論은 社民黨에게 政權을 잡게만든 土台가 되었으며 이러한 與論을 뒷받침으로 브란트政府는 東方政策을 強力히 実行할 수 있었으며 基本條約을 체결하여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을 1973年 9月 19日 實現시켰고 이날 「自負의 날도 비탄의 날도 아니다」라는 西獨 與野黨의 院內總務의 聲明은 「接近에 의한 變化政策」을 하기 위하여는 東獨이 主張하는 UN 同時加入을 受諾하지 않을 수 없었던 不可避性을 內包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다.

### 3) 東獨의 對西獨政策

그러면 東獨의 對西獨政策은 어떠한 性格을 띄우고 있었기에 社民黨이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主張했으며 UN 同時加入이란 基本條約을 체결하겠금 되있는가를 밝힐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北韓의 統一政策을 研究檢討하고 우리의 戰略을 衡立하는데 있어 조그만한 참고가 될수 있다는데서도 그 意義를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

東獨의 對西獨政策은 소련의 對東獨政策을 無視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東獨憲法 第2條가 東獨의 共產黨이 소련 共產黨路線을 따를 것을 明文化 하므로써 소련의 對獨政策을 無視할 수 없다는 見解에 두드러진 뒷받침을 한다. 4)

소련과 國交를 맺는데 成功한 아데나워首相이 이를 契機로 唯一合法往來를 主張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西獨을 認定한 소련은 西獨의 見解와는 달리 아데나워首相이 國交를 맺고 모스크바를 떠난지 이틀후인 1955年 9月 20日 東獨소련條約을 체결하여 두개의 獨立된 獨逸이 있음을 과시하고 소련의 二個 獨逸論을 表面化시키었다. 이러한 소련의 두개의 獨逸論에 힘입은 울브리트政權은 西獨과 東獨은 獨立된 두개의 獨逸임을

---

註 4) 이러한 憲法的規定은 다른 共產諸國에서 찾아 볼 수 없는 特例이다.



主張하고 여러 法令을 改定했던 것이다. 5)

이러한 두개의 獨逸論을 바탕으로 東獨이 西獨政府와의 政府間的 協商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두개의 獨逸이 戰後 組織되었다는 東獨의 主張은 塙地利와 獨逸의 경우를 비유하면서 그 理由를 내세우고 있다.

塙地利는 二次大戰前까지 (히틀러政府의 합방정책으로) 獨逸이었으나 戰後 分斷되어 獨立된 新生國家가 된 것이며 이와 同一한 것이 東西獨의 경우라는 것이며 西獨에서 主張하드시 東西獨의 關係가 內獨關係라는 것은 政治, 經濟 및 社會, 文化體制가 다른 東西獨間에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東獨의 國際法的인 見解는 國際法的으로 認定받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塙地利와 獨逸과 東西獨과의 關係는 國際法的으로 判異한 差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만일 二次大戰後 占領軍이 獨逸合併을 宣言했거나 또는 새로운 2個의 新生國家가 탄생됨을 宣言했다라면 두개의 獨逸이 새로 獨立 되었을 것이나 占領軍은 第3帝國의 同一性을 宣言하고 다만 塙地利만이 새로 獨立될 것을 明示했기 때문에 國際法的으로 東西獨의 關係는 塙地利와의 關係와 判異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

註 5) 東獨國民은 東獨民族이라는 國籍法, 西獨民이 東獨을 旅行할때 비자料支払法等等

6) Neues Deutschland. (東獨기관지) 1971. 10月15日字

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7)

#### 4) 東獨의 UN加入申請理由

이러한 두개의 獨逸論을 土臺로 東獨은 UN加入申請書를 UN에 提出했다.

東獨의 UN加入申請理由를 보면 東獨의 對西獨政策을 알 수 있다.

1971년에 開催되는 第26次 UN總會에 보낸 東獨政府의 對UN覺書를 보며는 「4大強大國의 포스담協定에 의한다면 히틀러의 軍國主義, 人種差別主義 및 나치주의를 完全除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우리 東獨政府는 上記協定에 따른 任務를 誠實이 이행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UN이 目的하는 世界平和에 기여한바 多大하다. 이러한 UN의 任務를 誠實히 완수한 우리는 따라서 UN에 加入할 權利를 갖고 있는 것이다. 國際法上的 同等한 자격으로 UN과 기타 國際機構에서 共存할 수 있는 우리의 權利는 유감스럽게도 無視當하고 있다. 그 例가 바로 우리 東獨과 西獨과의 關係이며 나아가서 西獨의 影響을 받고 있는 다른 西方國家들과의 關係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8)

---

註 7) 1945年6月5日의 聯合軍代表의 共同宣言文, 同年2月4日~11日까지의 알타會談 및 7月17日~8月2日까지의 포스담會談 참조.

8) Neues Deutschland, 1971. 10. 15 日字.

이 覚書의 內容을 간추려보자면

(1) 나치主義者를 숙청했기 때문에 포스담協定の 任務를 誠實이 완수했으며, 任務완수로 인하여 同協定에 따라 U N 및 기타 國際機構에 加入할 權利가 있으며 (2) 東獨과 西獨은 國際法上의 同等한 主權國家인데도 불구하고 東獨이 主權國家의 내우를 받지 못하여 東西獨의 關係와 기타 西獨의 影響力을 받고 있는 西方國家와의 關係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5) 東西獨의 妥協

이미 西獨은 바르의 東獨과의 直接協商을 主張하는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에 따라 東獨의 主張인 政府間會談을 수락하였고 U N同時加入을 수락하고 할슈타인 原則을 포기함으로써 唯一 合法性論을 포기한 것이 되어 對東獨에 對하여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가 統獨을 포기하는 政策이 아니라고 西獨政府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는 첫째, 東西獨基本條約 第8條에 兩獨은 본(Bonn)과 東伯林에 各各 「代表機構」를 설치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代表機構」란 用語가 相互獨立된 主權國家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內的特別關係」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兩獨이 條約文書를 교환할때 西獨政府가 同條約文의 뜻이 「內的特別關係에 兩獨이 놓여 있다는 것이지 獨立된 두개의 獨逸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쓰여진 覚書를 東獨政府에 受交시키

고 東独政府가 이를 受交했다는 確認書를 發行하므로서 西独의 見解를 默示的으로 認定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바로 이 두가지의 點이 東独이 西独에게 양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

이로 말미암아 相互양보한 것으로 풀이되며 1963年 主張한 바-르氏의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의 첫단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6) 基本條約締結에 대한 東西独의 論難

( 日民族두國家論과 西民族두國家論을 中心으로 )

앞에서 말한 東西独相互間에 讓步의 核心이 되는 問題는 追後에 論하자는 態度에 基因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兩側의 根拠는 現國際정세하에서는 當事者끼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急先務의 問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相對便의 底意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默示的態度를 取하면서 我田引水格으로 解釈하겠음 方관하면서 締結한 條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번 指摘한 바와 같이 東独은 西独이 永久 分断되어 各各 獨立된 主權國家임을 認定받기를 希望하고 있는데 反하여 西独은 統獨을 目標로 한 「內的特別關係」를 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同條約締結로 인하여 兩獨의 問題가 解決된 것이 아니며 다만 兩獨間의 接觸이 過去 冷戰時代보다는 完화된 것으로만

---

註 9) Frankfurt Allgemeine. 1972年 11月 2日 字. 3面.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根本적인 問題인 統獨이나 永久  
分斷이나 하는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限 兩獨의 論難은 계속될  
것이다.

그 結果가 바로 基本條約締結後의 兩獨의 論難이다.

兩獨의 새로운 論難의 불씨는 1973年 7月 31日 西獨聯邦憲法裁  
判所가 基本條約은 一民族二國家를 뜻하는 「內的特別關係를 뜻한  
다」라고 判示한데서 基因하고 있다.

兩獨의 UN同時加入을 標榜하는 基本條約은 두개의 獨逸을 뜻하  
는 것 같다. 만일 이 條約이 表面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개의  
獨逸을 뜻하는 境遇, 西獨으로서는 西獨憲法(基本法) 前文과  
第 146條에 規定된 統獨을 포기하는 結果를 조래하기 때문에 違  
憲의 問題가 發生된다.

그러기 때문에 野黨이 집권하는 바이에른州政府가 지난 5月 28日  
同裁判所에 違憲与否에 對한 審議를 提所했던 것이다. 提所를 받  
은 上記 裁判所는 「獨逸帝國은 2次大戰이 끝난 후에도 占領軍에  
의한 合併宣言이 없었기 때문에 國際法的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同一性의 原則에 따라 東西獨은 하나의 帝國을 頂點으로  
部分的으로 政府를 組織하고 있는 상태로서 兩獨의 關係는 州와  
州의 關係처럼 놓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同條約은 違憲이

아니다』라고 判示했었다.

이러한 判示에 對하여 西獨内の 與野는 만족감을 表明하는 聲明  
를 發表하고 있으며 10) 이 判例는 망골트教授의 學說인 「지봉說」  
을 근거로 判示한 것이다.

이러한 一民族二國家論의 判示에 對하여 東獨과 소련은 즉각적인  
반격을 가했다. 東獨의 見解에 의한다면 西獨과는 달리 二民族二  
國家論을 표방하고 있다. 基本條約締結로 因하여 兩獨이 U N에  
同時加入과 同時에 國際社會的으로나 國際法的으로 主權國家임을 認定

註 10) Welt der Arbeit, 1973. 8. 17.日字

同判決文은 以上の것 외에도 「어떠한 西獨의 憲法機關도 基本  
法에 規定된 統獨問題를 政治的으로 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統獨을 民族自決原則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東西獨 分  
界線에서의 東西獨에 의한 사격행위도 違法的 行爲이기때문  
에 西獨政府는 계속 이를 지양하는 政策을 밀고 나가야  
하며 兩獨民의 通信, 移住의 自由 및 商行為의 自由를  
同條約이 保障하고 있는 것이며 이 範圍內에서 西獨政府는  
계속 그의 政策을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判示하므로서  
政府의 政策제량권의 限界를 明示하였으며 바르長官이 東獨  
軍人이 分界線에서 피난민을 사격하는 行爲는 그리 重要  
하거나 심각한 問題가 아니다라고 말한것에 대하여 심각하  
고 重要한 問題다라는 判示를 하여 政府政策에 잘못이 있  
음을 指摘, 結果的으로 野黨인 基民黨의 見解와 一致되기  
때문에 野黨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西獨内の 與野는 同判  
決에 따라 結果的으로는 政府가 승리한 것이지만 法的理由  
에 있어서는 野黨이 승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받고 있는 것이며 第3帝國은 2次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完全몰락 되었으며 그 땅위에 二個의 獨逸이 新生國家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第3帝國과의 同一性說을 主張하는 西獨聯邦憲法裁判所의 見解는 보복주의的이며 침략주의的인 見地에서 파생된 法的見解이며 兩獨이 모처럼 樹立시킨 國交正常化關係를 惡化시키는 것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새로운 舌戰으로 전개되고 있는 事實이다. 11)

따라서 東西獨의 基本條約은 임기응변적으로 마련된 기형아라고 볼 수 있으며 根本的인 東西獨의 問題를 解決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으로의 問題는 永久分斷이나 또는 統獨이나 하는 問題이나 이는 現國際政治의 복잡성에 따라 短時日內에 解決될 수 없는 것으로서 西獨에서는 바-르長官의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長官 역시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을 그가 포방한지 10年後인 今年(1973) 7月11日, 10年前에 行한 같은 場所에서 行했으며 基本條約에 規定한 UN同時加入은 統一의 길도 아니요, 永久分斷의 길도 아니며 다만 「오랫

註 11) Neues Deutschland. 1973. 8.16日字.

1973. 3月, 東獨共產黨中央黨書記. von Hermann Axen의 演說 ; Deutschland Archiv 1973. 4月号, 414面

및 6月号 568面內 ; 5月28日부터 29日까지 사이에 開權된 黨大會에서 東獨首相 호네커의 演說文.

동안 움직이지 않은 自動車가 움직일때 삐걱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것」이라고 力說하고 이어서 相互合議에 의하여 자기의 利益의 實現化를 스스로 자제해야 할 時代가 同條約締結로 말미암아 始作되었다고 말했다. 12)

따라서 西獨政府는 東獨의 利益을 염두에 두고 統獨政策을 밀고나갈것을 再強調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の 東西獨關係를 통한 考察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区分 結論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1) 基民黨時代에 唯一合法性을 西獨이 主張한데 反하여 東獨은 두개의 獨逸을 主張했고

(2) 世界정세와 東獨의 人的, 物的 完全차단정책으로 말미암아 統一이 빠른 時日內에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느낀 社民黨은 東獨과 소련의 이익을 고려하고 長期 東西獨의 차단으로 말미암아 統一이 成就된다하더라도 同族間의 異質化 및 性格變化로 원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한 나머지 人的, 物的 問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容易하게 하여두자는 생각에서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내세웠으며

(3) 이 政策을 實現化하기 위하여 西獨은 東獨이 永久分斷을 目標로 내세우는 UN 同時加入을 條件附的으로 수락하고 反面에 人的, 物的접촉을 過去보다 容易하게 만들어 놓았고

---

註 12) Deutschland Archiv 1973. 8月号, 867面以下



(4) 東獨으로서는 西獨의 單獨 國際社會의 位置를 弱化시키어 東獨을 西獨과 同等한 國際的位置로 승격시키는 線에서 永久分斷政策을 文書化하는데 약간의 후퇴를 시키어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끝으로 西獨이 東獨이 主張하는 U N 同時加入을 수락한 것은 西獨 知識層의 理解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同條約으로 因하여 完全分斷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法的이나 政治的으로 「內的特別關係論」을 發展시켜 現實的인 突破口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5 ]            結            論

本論에서 6.23 宣言의 意義와 背景에 따른 戰略論理를 비롯하여 U N 과 韓半島問題 그리고 東西獨 統一政策過程을 考察하였다.

따라서 結論적으로 南北韓의 경우와 東西獨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異質性과 類似點이 있는가를 比較 評價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첫째, U N 同時加入을 한 西獨과 우리의 意圖는 同一하다고 볼 수 있으나 國際社會에서의 主導權의 面에서는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獨逸에 있어서는 永久分斷을 目的으로 U N 同時加入을 먼저 主張한 東獨의 提案을 西獨이 國際緊張緩和과 世界정세와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目的으로 受諾했으나 우리는 國際情勢의 緊張緩和와 世界平和에 寄與하기 爲하여 朴大 統領이 北韓에 앞서 6.23 宣言을 世界萬邦에 宣言함으로써 主導權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西獨은 U N 同時加入에 있어서 國際社會에서의 難關이 없었는데 反하여 우리에게서 이번 第28次 U N 總회에서 體驗한바와 같은 많은 難關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西獨은 東獨이 提議한 U N 同時加入을 수락함으로써 東獨과 國交關係를 맺고 있는 共產國家 및 非同盟國家들을 相對로 한 理解와 說得이 必要없었거나 또는 容易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比하여 우리의 6.23 宣言은 北韓의 反對에 봉착했기 때문에 西獨의 경우와는 달리 北韓과 親交關係를 맺고 있는 共產國家와 非同盟國家들을 相對로 北韓意思에 反하는 理解說得을 加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北韓이 6.23 宣言을 拒否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성은 過去와 다름없다는 것을 立証한 것이다.

그 理由는 昨年까지만 해도 U N 加入을 願했고 U N 外의 다른 國際機構(例 WHO)에 加入한 北韓이 유독 U N에의 加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大韓民國에 對한 기만이요, 國際緊張緩和에 役행하는 行爲이며 7.4 聲明에 對한 國際社會의 保障的 提示를 拒否하는 行爲라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6.23 宣言을 土臺로 한 U N 同時加入이 7.4 聲明에 對한 國際社會의 保障的 提示가 될 수 있다는 풀이는 北韓이 U N에 同時加入함으로써 이제까지 妥協과 協商을 의면하면서 불법침략성만을 고집했던 北韓의 恣行이 會員國與論앞에서 누그러질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罪惡은 行爲가 直接的으로 U N 會員國의 비판의 대상이 되며 U N의 눈초리로 말미암아 北韓의 不法的인 行爲가 주춤될 수 있다고 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朴大統領의 6.23 平和外交宣言은 7.4 聲明에 對한 國際保障的 提示라고 말할 수도 있다.

넷째로 우리 政府의 段階的 統一方案과 西獨바르長官의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 間에 類似點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獨은 赤化統獨政策을 止揚하고 惡劣한 侵略行爲를 西獨에 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의 与件이 西獨에 賦与되고 있는데 反하여 우리에게서 北韓의 侵略性이 예나 지금이나 變化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西獨과 같은 与件이 欠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西獨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難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대한 立証은 第8次 南北赤十字會談을 12月 19日 서울에서 開催하는 韓赤 提案을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에 의한 탄압중지」云云等の 政治的 생트집을 잡아 北赤이 11月 28日 事實上 拒否했다는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類似한 政治刑法改正의 論點은 兩獨間에도 있었으나 우리와 本質的 差異가 있다.

東獨은 西獨과의 會談을 前提로 우리나라의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과 類似한 西獨의 「政治刑法」에 대한 全面改正을 要求한 적이 없고 다만 東獨에 있는 共產主義者들도 処罰하겠음 規定하고 있는 部分에 限하여 改正을 要求했던 것이며 이러한 要求를 西獨이 1969年에 수락했다는데 差異點이 있다.

이와같이 東獨은 現實主義에 立却한 協商態度를 보여줌으로써 西獨에게 与件을 갖다 준데 反하여 北韓은 侵略性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与件이 形成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段階的 統一方案이 앞으로 포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態度變化로 인한 与件形成을 成就

하기 위하여 北韓과 親交關係를 맺고 있는 共產諸國과의 접촉을 보다 強化해야 하며 西獨의 政治刑法의 改正을 참작하여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알맞는 國家保安法 및 反共法의 一部 改正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現行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에 의하면 우리 大韓民國內에 있는 共產主義者들만이 이 法의 対象이 될 뿐 아니라 北韓에 있는 共產主義者들도 이 法의 処罰對象이 된다. 그러나 7.4 聲明以後 우리 政府가 이 法의 処罰對象이 되는 北韓側 調節委代表와 北赤代表를 処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한 処罰하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는 突現될 지도 모르는 北韓으로 부터의 家族訪問者들도 訪問期間內에 는 処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大韓民國內에서 活動할 意圖下에 잠입한 간첩 및 共產主義者 等等의 경우에 限하여 処罰할 수 있도록 改正할 수 있지 않은가에서이다. 만일 改正을 政府가 검토할 用意가 있을 경우에는 이 改正이 北韓으로 하여금 前述한 우리의 段階的 變化政策을 수행할 수 있도록 協商條件의 助成을 前提로 改正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西獨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國內 輿論政策을 들 수 있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朴長官의 「接近을 통한 變化政策」을 土臺로 한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은 10餘年の 오랜 期間을 통하여 大學人을 中心으로 하는 知識層의 同調를 얻었다는 것이며 그것을 基盤으로 強力히 UN 同時加入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6.23 宣言도 知識人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知識人이 혹시 國際情勢를 파악하고 있는 특수 知識人에 局限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發生될 수도 있다.

원래 表面上으로 볼 때 UN 同時加入이라는 것이 두개의 韓國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6.23 宣言以前에 우리 政府 역시 같은 意見이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政府와 國民들은 6.23 宣言以前에는 南北韓UN 同時加入은 두개의 韓國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여 反共法 違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UN 同時加入은 長期間 두개의 韓國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 一般國民들이기에 갑작스런 政策變化에 時代的 適應을 하지 못하고 一部는 계속 UN 同時加入이 두개의 韓國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宣言이 7.4 声明의 基本 精神과 어긋나는 政策이 아냐냐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다.

이러한 國民들의 오해를 解消시키기 위하여 國際情勢의 境實을 國民에게 보다 더 強力히 啓蒙시킬 必要가 있을 것으로 意料된다.

이러한 啓蒙은 政府側의 努力도 重要하지만 一般 言論機關의 活潑한 自發的 努力이 더욱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言論機關의 活潑한 報道를 위하여는 南北韓의 統韓政策에 關한限 政府로 부터의 보다

開放的 政策이 必要할 것으로 믿는다.

言論機關을 통한 贊反의 論難이 때로는 政府의 對北韓會談에 副  
作用과 차질을 가져다줄 염려가 있어 不必要하다고 생각할 수 있  
으나 對話를 통한 對決이 불가피한 現實情에 비추어 볼 때 言論  
機關을 통한 贊反의 論難과 研究機關의 自由스러운 對話保障은 客  
觀的으로 說得力이 있는 理論確立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點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後世 史家들에 의하여 讚辭를 받게 될 우리  
의 6.23 宣言은 더욱 빛날 것이며 나아가서 1970年 8月 15日에  
행한 朴大統領의 8.15 特別宣言인 「南北韓이 對話를 통한 努力  
만이 現國際情勢에 調和를 이루고 統一을 保障할 수 있다」는  
우리 政府의 統韓政策變化 역시 더욱 빛 날 것이다.